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급 및 재취업  
실태분석: 1998년도

방하남 · 김동우 · 하윤숙

## 제 1장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

### 제 1절 실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의미로서의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실제 통계측정상 실업자는 조사가 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간에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위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1)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그리고 (2)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졌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은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실업의 측정기준으로 인해 실제 취업상태에 있어서 실업에 가까운 다수의 단시간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실업자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sup>1)</sup>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을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이는 실업의 일반정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실업은, 일반적 기준과는 달리, 비록 1주일내 1시간이상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지식·기능·경력 등에 비추어 불완전한 취업(주당 22시간 미만의 근로)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에서는 (1)근로의 의사, (2)근로의 능력, (3)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업’의 인정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위의 요건들을 다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1)근로의 의사라함은 취업을 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지도, 직업소개를 통한 취업알선을 받는 것과 피보험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의미한다. 둘째로 (2)근로의 능력이 있다하는 것은 실제로 근로에 종사하여 임금을 얻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 및 주변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3)적극적인 구직활동은 근로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지방노

---

1) 그러나 실업을 넓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는 취업상태에 있지만 취업시간, 근무조건, 고용안정성 등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취업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the underemployed)나 구직의 어려움때문에 구직활동은 포기했지만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 등도 실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동관서에 구직을 신청하고 직업소개에 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고용보험에서는 위의 요건을 만족한 실업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직전 2주간의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실업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 제 2절 실업급여의 개요

### 1. 실업급여의 기능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그리고 경기조절 및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유지 압박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하여 기능·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리고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이들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노동력의 이동 및 인력수급상황이 신속히 파악되어 적기에 실효성이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이 가능케 된다.

실업급여는 이처럼 실업을 당한 근로자개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경제적 기능: 실업률이 증가하는 불경기에는 실업급여의 지출액이 증가하여 소비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고실업률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경기의 회복이 용이하게 하는 경기순환적 자동안전장치(built-in stabilizer)의 역할을 수행한다.

(2)사회적 기능: 경제의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당한 근로자 개인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분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3)취직촉진기능: 실업급여를 수급함으로써 실업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

게 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력의 보존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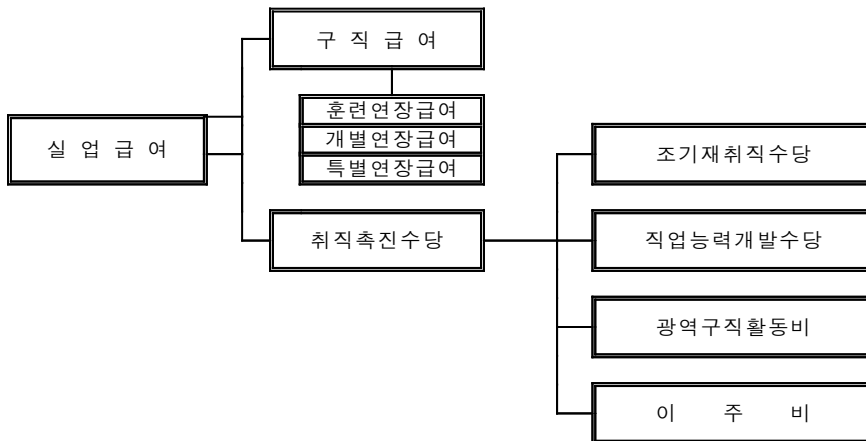
## 2. 실업급여의 종류(법 28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직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이다. 실직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된다.

▪ 취직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인 성격의 것인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조기에 재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취직촉진수당중 조기재취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 않다.

<표 1-1> 실업급여의 구성



### 제 3절 실업급여의 내용

#### 1. 구직급여

##### 1) 구직급여의 개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이직전 18개월중 12개월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러나 1998년에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21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 2) 수급자격인정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직업안정법 제9조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수급자격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인정신청시부터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직업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여 조기재취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영 제42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2주 마다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이 수급자격을 갖춘 자를 수급자격자라고 한다. 수급자격 인정은 첫째,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확인을 받았을 것, 둘째 구직신청 했을 것, 셋째,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통산하여 12월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넷째 수급기간내의 자일 것, 여섯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3)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이내의 기간내서만 지급(법 제39조)되는데, 실업급여의 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0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에 서만 지급된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10월의 수급기간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급기간을 설정한 주된 이유는 이직자에게 실업을 조속히 신고하도록 유인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업지도를 거부할시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소정급여일수에서 이 기간

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하다.

#### 4) 급여기초임금일액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된다(법 제35조제1항).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최저기초일액, 즉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한다(법 제35조제4항).

<표 1-2> 최저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표

이직전 1일소정 근로시간	최저급여기초임금일액		
	'97.9.1~'98.8.31 이직자	'98.9.1~'98.9.30 이직자	'98.10.1~'99.8.31 이직자
4시간	11,880원 (1,485원×8시간)	12,200원 (1,525원×8시간)	6,100원 (1,525원×4시간)
5시간	"	"	7,625원
6시간	"	"	9,150원
7시간	"	"	10,675원
8시간	"	"	12,200원

주: 적용예('98.9.1~'99.8.31적용 시간단위최저임금: 1,525원, 일단위(8시간): 12,200원)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임금일액으로 하게 되는데(영 제48조), '99.7.1이후 이직한 수급자격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은 6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이 결정된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임금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동일하다.

<표 1-3>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

-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산정지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명칭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최저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한 후 지급되는 임금·기본급 임금	○	○	○	
2. 일·주·월 기타 1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급·주급·월급 등으로 정하여 지급되는 임금				
① 금융·출납 등 직무수당, 반장, 과장 등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 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	
②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	○	
③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	○	
④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⑤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⑥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	○	
⑦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 지급되는 금품과 1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및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			
②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③ 근무일에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입궐수당 등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명칭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최저 임금	기타 금품
④ 능률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가급, 능률수당 등	○			
⑤ 월차·연차휴가수당 개념의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⑥ 일·숙직수당	○			
⑦ 봉사료(팁)				
가.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나.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으로써				
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가족수당, 교육수당으로써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본인 또는 자녀교육비 부담 해당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③ 급식 및 급식비로써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				○
④ 별거수당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② 단순한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경조비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피복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식, 통근차이용, 기숙사, 주택제공				
③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도 사유발생일이 불확정, 무기한 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 (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정보비(활동비), 작업용품대(기구손실금, 작업복, 작업화 등), 차량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등				○
⑤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운전자보험, 산재보험 등)의료보험, 국민연금, 재해보상 등				○

### 5)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받은 1일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이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이다. 그러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급여기초임금일액의 7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표 1-4>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표

이 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최 저 구 직 급 여 일 액			
	'98.9.1 ~ '98.9.30 이직자		'98.10.1 ~ '99.8.31 이직자	
		적용기초일액단위		적용기초일액단위
4시간	8,540원 (12,200원×70%)	17,080원미만	4,270원 (6,100원×70%)	8,540원미만
5시간	"		5,337.5원 (7,625원×70%)	10,675원미만
6시간	"		6,405원 (9,150원×70%)	12,810원미만
7시간	"		7,472.5원 (10,675원×70%)	14,945원미만
8시간	"		8,540원 (12,200원×70%)	17,080원미만

※ 적용예('98.9.1~'99.8.31적용 시간단위최저임금 : 1,525원, 일단위(8시간) : 12,200원)

#### 6) 소정급여일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0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법 제39조).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60일에서 최대 210일(법 제41조)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실업을 장기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나 반면에 실업자가 재취업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 따라서 빈번한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노동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보험기간이 긴 사람에게 보다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하고, 외국에 비해 정년이 짧고 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소정급여일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령에 상관없이 소정급여일수를 50세이상의 고령자와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표 1-5>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 분		피 보 험 기 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 직 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6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6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7) 대기기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 기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한다. 대기기간동안에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상병급여, 취직촉진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신고를 행한 당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다<sup>2)</sup>.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기간이 길지 않은 단기실업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으며,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잦은 이직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직후의 일정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해 실업급여제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법제정 당시에는 대기기간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계적으로 2주로 하였으나 실업의 신고 초기부터 수급자격신청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받은 2주(14일)가 경과하여야 대기기간이 만료되도록 법개정('96.12.30)을 하였다(법 제40조). 따라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받지 못하면 대기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대기기간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다음번 실직시의 피보험기간 계산시에는

### 2) 주요국의 실업급여 대기기간

독일: 없음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영국: 3일; 미국, 일본: 1주; 캐나다: 2주; 브라질: 60일
---

ILO협약 제168호 제18조는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은 7일 이내를 권장하고 있고, 비준시 특별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 근로자의 경우는 대기기간을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근기법 제28조)가 있어서 실직 후 단기간의 생계유지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대기기간을 2주로 하고 있다.

과거의 피보험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될 수 있다.

#### 8) 실업의 인정

실업인정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실업인정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이러한 실업인정절차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모든 실직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자가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2주마다의 해당 요일이 되며 최초의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의 신청일(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2주일 후가 된다(법 제34조제3항). 또한 전회의 실업인정일부터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를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하는데, 기간은 통상 14일이나 실업인정일의 변경으로 인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다(법 제3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45조).

#### 9) 구직급여의 지급 및 연장지급

수급자격자는 2주간에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실업의 인정을 받은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법 제43조제1항]. 다만, 지방노동관서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에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3조제2항).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0월의 수급기간내에 대기기간 경과후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의해 결정되지만, 개별적인 수급자격자의 사정이나 경제사정의 악화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로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연장급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시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법 제42조 내지 제42조의 5).

연장급여의 종류는 <표 I -6>에서와 같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표 1-6> 연장급여종류 및 지급내용

구 분	대 상	연장일수	급여수준
훈 련 연장급여	·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	· 훈련기간 (최대2년) · 훈련전후 대기기간 (최대 60일)	· 구 직 급여 일 액 의 100%
개 별 연장급여	· 소정급여일수 종료시까지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급자격자	· 60일 이내	· 구직급여일액의 70%
특 별 연장급여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고 재취업이 되지 않은 수급자격자	· 60일 이내	· 구직급여일액의 70%

· 훈련연장급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자로서 총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주는 제도로 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에서 이직한 자, 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될 때까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 ③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자, ④급여기초임금일액이 3만5천원 이하인 자, ⑤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다.

·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실업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일정기간”내의 수급자격자에게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개별 실직자의 이직일, 피보험기간에 따른 차등없이 그 기간내에 급여가 종료된 수급자격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 때 퇴직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7만원)의 24월분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고 이직한 고액금품수령자는 제외된다.

특별연장급여의 실시여부는 연속되는 3개월간 실업률 등 피보험자의 실업상황악화를 반영하는 지표가 일정율을 초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여지급이 결정되는데, 우선 구직급여의 지급을 받은 수급자격자의 수를 월말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월간 각각 3%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수급자격신청률(매월의 수급자격신청자의 수를 당해 월의 말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셋째 실업률이 6%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10) 상병급여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날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수급자격자가 질병·부상을 입어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부상기간이 7일미만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구직급여를 대신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98.10.1부터는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 2. 취직촉진수당

### 1) 조기재취직수당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으로 조기에 재취직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써,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한 경우에 지급한다(법 제50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법 제50조제3항 및 영 제62조).

###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의 수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법 제51조]으로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하게 된다(영 제64조).

### 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숙박료를 광역구직활동을 한 거리 및 숙박수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법 제52조, 영 제65조 및 규칙 제62조).

#### 4)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 2장 실업급여 운영현황

제 1절 고용보험 적용현황 분석

1. 고용보험 적용현황

<표 2-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사 업 장 수			피 보 험 자 수		
	사업장	신규성립	소 멸	피보험자	취득	상실
95년	38,953	39,443	450	4,204,258	4,632,653	407,678
96년	43,723	7,916	2,982	4,330,885	1,519,322	1,395,985
97. 1	44,142	779	353	4,330,725	112,576	113,283
2	44,687	824	265	4,339,057	103,682	96,524
3	45,081	1,000	602	4,338,218	143,798	144,019
4	45,404	817	495	4,337,557	131,493	131,830
5	45,853	793	341	4,333,359	112,156	116,075
6	46,300	925	474	4,325,940	122,499	129,184
7	46,260	623	656	4,318,264	120,083	127,252
8	46,361	536	432	4,311,737	86,075	92,085
9	46,599	576	339	4,303,911	104,600	106,725
10	46,902	769	471	4,292,605	100,071	115,651
11	47,172	706	448	4,281,951	115,828	122,036
12	47,427	579	329	4,280,430	92,370	97,878
98. 1	74,774	27,813	463	4,309,327	160,267	130,768
2	89,082	14,943	466	4,517,276	380,930	172,620
3	119,001	30,767	765	4,687,570	358,036	185,922
4	130,488	12,069	394	4,771,013	264,204	178,800
5	136,254	6,564	722	4,803,537	206,311	164,318
6	140,200	4,421	437	4,796,775	171,493	184,003
7	146,060	7,111	1,196	4,763,318	173,457	205,223
8	155,654	10,254	597	4,773,103	161,918	151,028
9	162,839	8,356	1,051	4,794,374	193,281	170,187
10	226,807	64,715	709	4,897,774	243,972	140,843
11	309,344	75,137	968	5,079,349	320,804	152,679
12	400,000	92,247	971	5,267,658	351,980	147,297
99. 1	440,461	42,432	1,320	5,367,807	270,570	167,702

주 : 각 연도현황에서 사업장수와 피보험자수는 12월 현재 적용현황이며, 신규성립·소멸 및 취득·상실자 수는 당해년도 12월까지의 누계분임.

<표 2-1>은 1995년부터 1999년 1월까지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의 월별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 7월 1일 출범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실업급여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7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확대되기 전인 98년 이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97년 말 현재 47,427개의 사업장에 4,280,430명의 피보험자가 적용되었다. 그 이후 <표 2-2>에서와 같이 1998년 1월에 10인 이상, 3월에 5인 이상, 그리고 10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적용사업장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 1월 현재 고용보험의 총적용사업장수는 440,461개소이고, 총피보험자수는 5,367,807명이다.

<표 2-2>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보험사업별	적 용 범 위				
	'98. 1.1 이전	'98.1.1~2.28	'98.3.1~6.30	'98. 7. 1	'98.10. 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표 2-3>에서는 고용보험의 월평균 적용사업장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적용사업장수는 월평균 110,113개소이다. 그리고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되는 사업장수는 월평균 15,139개소이며, 소멸되는 사업장수는 월평균 715개이다. 신규성립사업장수가 소멸 사업장수보다 14,424개소를 초과하고 있다.

<표 2-3>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수 추이: 1997-1998 (단위 : 개소)

기간	적용사업장수	신규 보험성립	보험관계 소멸	증감
1997년 월평균	46,016	744	434	+310
1998년 월평균	174,209	29,533	995	+28,538
통산 월평균	110,113	15,139	715	+14,424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등락과 함께 피보험근로자수 역시 월별로 변하고 있는데 <표 2-4>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평균 피보험자수는 1997년에 4,316(천명), 1998년에 174,209(천명)으로 동일기간 통산 평균 피보험자수는 5,295(천명)이었다. 사업장의 신규 보험관계 성립으로 인한 신규가입자와 이직 및 비적용사업장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상실자의 추이를 보면 1997년의 경우 평균 상실자는 116(천명), 1998년에는 165(천명)으로 통산 월평균 신규가입자 229(천명), 상실자 141(천명)로 나타났다.



<표 2-4> 고용보험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추이: 1997-1998 (단위 : 천명)

기간	피보험자수	신규 가입자	상실자	증감
1997년 월평균	4,316	112	116	-4
1998년 월평균	6,274	346	165	+181
통산 월평균	5,295	229	141	+88

## 2. 실업급여 신청, 인정 및 지급현황

<표 2-5>는 1997년과 1998년의 실업급여 신청자수 및 급여지급액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97년에는 월평균 4,251명에서 '98년에는 월평균 36,539명으로 증가하였고 지급액의 경우에도 '97년 월평균 6,561백만원에서 '98년 월평균 66,596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97년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인원과 지급액이 97년에 비해 98년에는 약 10배 가량의 증가를 나타냈다.

<표 2-5> '97-'98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7년	'97년 월평균	'98년	'98 월평균
○ 신청자수	51,017	4,251	438,465	36,539
- 인정건수	50,312	4,193	434,199	36,183
○ 지급액	78,731	6,561	799,154	66,596
- 구직급여	76,155	6,346	783,881	65,323
- 취직촉진수당	2,577	215	15,273	1,273

또한 <표 2-6>는 1997년과 1998년의 실업급여 신청자수를 성별·연령별로 보여주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를 살펴보면 '97년의 경우 남성은 월평균 3,163명이었고, 여성은 월평균 1,088명이었으며 '98년에는 월평균 남성이 25,440명이었고, 여성이 11,099명이었다. 실업급여신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97년 월평균의 경우에는 50~59세가 1,34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98년 월평균의 경우에는 30~39세가 11,15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6> '97-'98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구 분	'97년	'97년 월평균	'98년	'98 월평균
남	37,960(74.4)	3,163	305,280(69.6)	25,440
여	13,057(25.6)	1,088	133,185(30.4)	11,099
30세 미만	5,563(10.9)	463	119,550(27.3)	9,963
30~39 세	12,463(24.4)	1,039	133,808(30.5)	11,151
40~49 세	13,942(27.3)	1,162	95,664(21.8)	7,972
50~59 세	16,163(31.7)	1,347	79,820(18.2)	6,652
60세 이상	2,886(5.7)	240	9,623(2.2)	802
계	51,017 (100.0)	4,251	438,465 (100.0)	36,539

<표 2-7>은 1997년과 1998년의 실업급여 신청자수 및 급여지급액을 지역별·이직사유별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11,36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이 11,078명, 서울·강원이 10,538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과 도산·폐업이 각각 31.7%, 27.6%로 가장 많았다.

<표 2-7> '97-'98 지역별·이직사유별 수급자격 신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계
계	10,538 (100.0)	11,078 (100.0)	7,812 (100.0)	11,368 (100.0)	5,441 (100.0)	4,780 (100.0)	51,017 (100.0)
도산·폐업	1,307 (12.4)	3,301 (29.8)	3,536 (45.3)	2,915 (25.6)	1,421 (26.2)	1,610 (33.6)	14,090 (27.6)
정리해고	935 (8.9)	1,629 (14.7)	801 (10.3)	1,398 (12.3)	502 (9.2)	630 (13.2)	5,895 (11.5)
권고사직	4,306 (40.9)	2,929 (26.4)	2,116 (27.1)	3,749 (33.0)	1,896 (34.8)	1,161 (24.3)	16,157 (31.7)
정년퇴직	1,579 (14.9)	1,218 (11.0)	548 (7.0)	972 (8.6)	682 (12.5)	540 (11.3)	5,539 (10.9)
기 타	2,411 (22.9)	2,001 (18.1)	811 (10.3)	2,334 (20.5)	940 (17.3)	839 (17.6)	9,336 (18.3)
지역별 구성비	20.6	21.7	15.3	22.3	10.7	9.4	100.0

※ ( )은 지역별 총신청자에 대한 구성비임

<표 2-8>은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자-자격 상실자, 실업급여신청자, 실업인정자 및 실업급여 지급인원의 월별 추이를 보여준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997년 1월에 4,331천명에서 1998년 12월에 5,268천명으로 1.2배 늘어난 가운데 실업급여신청자수는 3,416명에서 36,164명으로 10.6배 그리고 실업인정자는 3,378명에서 35,921명으로 10.6배 증가했다. 그리고 월별 실업급여의 지급인원은 1997년 1월에 6,425명에서 1998년 1월에는 18,142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나 1998년 12월에는 약 18만여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적용범위의 확대와 피보험기간의 단축, 그리고 특별연장급여<sup>3)</sup>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2-8> 월별 실업급여 신청, 인정 및 지급현황

월 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천명)	이직자- 자격상실자 (천명)	실업급여 신청자 (인)	실업인정자 (인)	실업급여 지급인원
97년 1월	4,331	113.3	3,416	3,378	6,425
2월	4,339	96.5	3,062	3,020	7,801
3월	4,338	144.0	2,849	2,810	8,301
4월	4,338	131.8	2,998	2,918	7,964
5월	4,333	116.1	3,004	2,928	8,106
6월	4,326	129.2	5,061	4,985	8,843
7월	4,318	127.3	5,005	5,009	10,166
8월	4,312	92.1	4,244	4,210	11,544
9월	4,304	106.7	4,562	4,490	13,083
10월	4,293	115.7	4,360	4,319	13,078
11월	4,282	122.0	4,714	4,644	12,842
12월	4,280	97.9	7,692	7,601	14,563
98년 1월	4,309	130.8	20,714	20,552	18,142
2월	4,517	172.6	36,128	35,884	37,613
3월	4,688	185.9	40,473	40,154	69,133
4월	4,771	178.8	38,026	37,611	91,633
5월	4,804	164.3	33,704	33,372	111,329
6월	4,797	184.0	30,047	29,726	115,056
7월	4,763	205.2	42,823	42,287	113,074
8월	4,773	151.0	38,664	38,023	130,175
9월	4,794	170.2	44,452	43,959	152,463
10월	4,898	140.8	37,525	37,230	171,776
11월	5,079	152.7	39,745	39,480	172,298
12월	5,268	147.3	36,164	35,921	178,068

<표 2-9>는 1996년과 1997년의 월평균 실업급여 신청자, 인정자, 수급자의 추이

3) 특별연장급여는 1998년 7월 14일부터 실시되었으며, 1998년 12월말 현재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수급자의 약 33%에 해당한다.

를 보여준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997년 월평균 4,251명으로 월별 신청자의 98.6%인 4,193명이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한편 1998년에는 월평균 36,539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신청자의 99%인 36,183명이 인정을 받았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폐업의 급증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제도상의 수급자격요건 완화, 즉 피보험기간의 단축, 실업급여 적용범위확대의 영향도 다소 반영되었다.

<표 2-9> 월평균 실업급여신청, 인정 및 수급자추이

(단위 :

명, %)

	실업급여신청자	실업급여 인정자	실업급여 지급자
1997년 월평균	4,251	4,193	10,226
1998년 월평균	36,539	36,183	113,397
통산 월평균	20,395	20,188	61,812

###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이직자, 실업인정자, 급여수급자의 비율추정

실업급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월평균 몇 %가 이직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있고, 이중 몇 %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실제로는 상실자의 몇 %가 급여를 신청하여 그 중 몇 %가 수급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표 2-10>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상실자, 신청자격자, 신청자, 인정자의 비율을 1997년과 1998년 년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2-10>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상실자, 신청자격자, 신청자, 인정자의 비율 (단위: 명, %)

	피보험자	상실자 (%피보험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자* (%상실자)	실업급여 신청자 (%자격자)	실업급여 인정자 (%자격자)
1997년 월평균	4,316,146	116,045 (2.7%)	13,500 (12%)	4,251 (31.5%)	4,193 (31.0%)
1998년 월평균	4,788,422	165,307 (3.5%)	44,600 (27%)	36,539 (81.9%)	36,183 (81.1%)

<표 2-10>에 의하면 1997년은 매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약 2.7%가, 그리고 1998년은 약 3.5%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실자 중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을 가지고 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 비자발적

이직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첫째, 기준 기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sup>4)</sup> 둘째, 이직사유로는 전직 등을 위한 이직이나 자기귀책에 의한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자여야 하며 셋째, 적극적인 재취직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격상실자 중 몇 %가 신청자격이 있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실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DB의 고용보험상실자의 이직사유와 근속기간의 두 가지 요건만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자의 비율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 요건은 고용보험 DB에서 알 수 없고 실업의 인정시에만 판단가능하게 된다.

<표 2-11>은 1998년 1년간의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직사유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 비율은 67.0%이며, 비자발적 이직의 비율은 33.0%이다.

<표 2-11>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별 분포(1998년) (단위 : %)

이직사유	비율(%)	이직사유	비율(%)
자발적 이직	67.0	비자발적 이직	33.0
자발적 이직	57.6	정년퇴직, 계약만료	3.5
기 타	9.4	권고사직	15.9
		폐업도산	6.6
		정리해고	7.1

그러나 여기에서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율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발적 이직자 중에서 9.4%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에 해당하는 이직자들의 문제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들 중 일정비율은 비자발적 이직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전직 등을 위한 임의퇴직’의 사유로 분류된 이직자들 중 일정비율은 비자발적 이직자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통계자료에서 집계되는 이직 사유들은 사업의 사용주들에 의해 보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통계에서 집계된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될 수밖에 없으며 얼마나 더 낮게 추정되고 있는지는 고용보험 이직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다.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자발적 이직자로 신고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4) 실업자의 증가등으로 인해 1998년 3월이후 한시적으로 2000년 6월까지 피보험기간 6개월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하였다.

상실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용보험DB상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된 이직자의 약 25%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 전체상실자의 약 45%내외가 비자발적인 이직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부록 2 참조).

## 제 2절 이직자 및 실업급여수급자들의 특성분석

### 1. 일반적 특성

<표 2-12>는 고용보험의 이직근로자와 실업급여수급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교육수준, 연령, 근속년수, 기업규모, 직종분포를 통해 보여준다. 비교의 목적을 위해 외부자료(KLI 노동통계, 1998)에서 구한 전체 피용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함께 제시한다.

① 성별구성: 전체 피용근로자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보험의 이직자 그리고 수급근로자 모두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험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66.6%를 차지함으로써 여성의 33.4%에 비해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은 약 3%정도 더 높아져 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남성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교육수준분포: 고용보험 이직자 중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25.9%인 것에 비해 실업급여수급자의 비율은 3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이직을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고졸 이하의 비율은 고용보험 이직자중 74%, 실업급여 수급자 중 68.8%에 해당함으로써 저학력자에 있어서는 이직을 대비 수급자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연령분포: 이직률은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실업급여 수급율은 연령대별로 20%~30%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39세 연령층의 비율이 약 30.2%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이직률 대비 수급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정년퇴직자들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제도적 특성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나, 실제로 이직자나 수급자 전체에서 정년퇴직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지나지 않아 설명력이 크지는 않다. 다른 한편, 고연령층의 경

우 근속기간이 길어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확률이 높고, 고연령층 중 조기(명예)퇴직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④ 근속년수분포: 이직자 중에서는 5년 이상의 근속자 비율이 21.1%인 반면, 수급자들 중에서 5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42.6%로 전체 고용보험 이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의 비율은, 고용보험 이직자의 12.9%, 실업급여수급자의 23%를 차지함으로써 이직률 대비 수급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급자중 장기근속 후 이직하는 정년퇴직자와 조기퇴직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2> 고용보험 이직근로자 및 실업급여수급 근로자들의 주요특성 (단위 : %)

		전체비용 근로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보험의 이직자(%) <sup>1)</sup>	실업급여 수급자 <sup>2)</sup>
성별	남성	70.8	72.3	66.6	69.7
	여성	29.2	27.7	33.4	30.3
교육 수준	초졸	8.0	4.6	5.3	7.8
	중졸	17.2	11.1	12.3	13.8
	고졸	48.7	51.2	56.4	47.2
	전문대졸	7.2	10.5	9.7	9.6
	대졸 이상	19.0	22.6	16.2	21.6
연령	30세 미만	37.7	37.3	44.5	26.5
	30~39세	52.2	33.6	26.8	30.2
	40~49세	10.1	19.0	15.9	21.8
	50세 이상	10.1	10.1	12.9	21.5
근속 년수	1년 미만			37.6	12.2
	1~3년 미만	44.5	53.1	29.1	30.4
	3~5년 미만	15.8	12.8	12.2	14.8
	5~10년 미만	22.3	18.6	11.6	19.6
	10년 이상	17.4	15.5	9.5	23.0
기업 규모	30인 이하	29.1	17.1	17.0	11.9
	30~99인	25.1	21.9	29.4	26.2
	100~299인	18.6	19.7	23.5	20.7
	300~499인	6.4	7.1	6.4	6.7
	500~999인	7.9	0.1	7.3	8.9
	1,000인 이상	12.9	25.6	16.4	25.6
직종	임원 및 고위관리자	2.9	5.5	4.4	5.7
	전문가	9.5	4.7	3.4	4.1
	기술자 및 준전문가	7.8	9.8	8.2	10.7
	사무직원	23.7	29.8	25.9	25.6
	서비스 및 판매직	4.1	8.9	10.2	6.6
	농업·임업·수산업	0.1	0.3	0.5	0.6
	기능생산직	18.8	23.0	23.2	19.2
	장치, 기계조작원	26.2	6.3	7.7	4.4
단순생산직	5.4	11.6	16.7	23.1	

주: 1)고용보험DB자료(1998); 2)실업급여수급자DB자료(1998)

⑤ 종사기업의 규모분포: 고용보험 이직자 중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 피용 근로자 중의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보험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피용 근로자의 27.2%, 이직자의 30.1%를 차지하는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들 가운데서는 4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종사자들의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⑥ 직종분포: 직종별 전체 피용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장치, 기계조작원과 사무직원이 각각 26.2%,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보험 이직자의 비율을 보면 장치, 기계조립원의 경우 7.7%로 현저하게 낮아지며, 사무직원의 경우 25.9%로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그룹이 실업급여수급자중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아지는데, 장치, 기계조작원이 4.4%, 사무직원의 비율이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치, 기계조작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애초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장치, 기계조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지 6.3%라는 분석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사무직원(25.6%) 다음으로 단순생산직의 비율이 23.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순생산직은 전체 피용근로자 중에서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이직자 및 수급근로자의 비중은 16.7%와 23.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무직의 경우 전체 피용근로자(23.7%)에 비해 이직자(25.9%) 및 실업급여 수급자(25.6%)의 비율이 낮고, 단순생산직의 경우 전체 피용근로자(5.4%)에 비해 이직자(16.7%) 및 실업급여 수급자(23.1%)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의 이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비율도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대부분인(97%) 이직자는 연령 및 근속년수 분포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들이 전체 이직자들에 비해 고연령자의 비율과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들 가운데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2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직자들 가운데서는 12.9%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근속년수에 있어서도 10년이상 근속자들의 비율이 수급자들 가운데서는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이직자들 가운데서는 12.9%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종사하던 기업의 규모에 있어서도 수급자들의 경우 전체 이직자들에 비해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이직자들 가운데 9.5%인 반면 수급자들 가운데는 23.0%를 차지하고 있다.

## 2.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분포

<표 2-13>에서는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분포와 실업급여수급자들의 이직사유분포를 1998년 상반기 노동력 유동실태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일반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분포와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이직근로자들 가운데서는

전직 등을 위한 임의퇴직이 76.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경영상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등을 포함하는 비자발적 이직은 20.7%, 기타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사업장의 이직자들 가운데서는 57.6%가 임의퇴직으로 나타났다고, 32.0%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이 고용보험의 이직자 가운데 12%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3> 각 대상 근로자들의 이직사유별 분포 (단위 : %)

이직사유	전근로자중 이직자 <sup>1)</sup>	고용보험의 이직자 <sup>2)</sup>	실업급여 수급자 <sup>3)</sup>
임의퇴직	76.7	57.6	4.3
사업경영상 해고	14.0	29.5	82.5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6.7	3.5	6.3
기타	2.6	9.4	7.0
전 체	100.0	100.0	100.0

- 1) 전근로자중 이직자 (1998년 상반기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자료)
- 2) 고용보험의 이직자(고용보험DB, 1998.1-1998.12)
- 3) 실업급여 수급자(수급자DB, 1997.7-1998.12)

최근 기업의 도산·폐업율이 높아지고 정리해고에 의한 이직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이직자의 경우에 사업경영상 해고의 비율이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용보험 이직자의 경우에 사업경영상 해고는 권고사직이 1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폐업·도산이 6.6%를, 정리해고가 7.1%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 가운데서는 사업경영상 해고가 82.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의퇴직자의 비율도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는 임의퇴직이지만 실질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표 2-14>는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분포를 성별로 보여준다. 성별 이직사유분포는 전직 등을 위한 임의퇴직이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의 72.8%에 비하여 무려 20%가 감소한 것으로 1998년의 이직유형이 1997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폐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이직사유를 비교해보면 결혼·육아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14>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이직사유분포(1998년도)

(단위 :

%)

이직사유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전직 등을 위한 임의퇴직	51.2	48.6	50.3
결혼·육아 등을 위한 임의퇴직	0.5	6.1	2.3
질병 등으로 인한 임의퇴직	1.0	1.7	1.2
징계해고	0.6	0.5	0.6
정리해고	7.3	6.7	7.1
폐업·도산으로 인한 퇴직	7.0	5.8	6.6
계약기간 만료	2.6	2.5	2.6
명예, 조기퇴직	16.4	14.7	15.9
정년퇴직	1.0	0.7	0.8
비적용사업장으로의 이동	0.4	0.2	0.3
기타	9.0	9.2	9.1
전 체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DB(1998)

<표 2-15>는 실업급여신청자들의 이직사유별 분포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1997년도에는 전체 수급자 중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이 35.5%로 가장 높았고, 사업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25.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이직사유를 분석해 보면,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산·폐업에 의한 이직보다도 정리해고의 비중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6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전체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권고사직이 49.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리해고가 18.0%, 도산·폐업이 14.9%의 순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5> 실업급여신청자의 이직사유별 분포

(단위 :

%)

이직사유	1997. 6 ~ 12	1998. 1 ~ 6	1998. 7 ~ 12	전체
도산·폐업	25.3	15.8	12.9	14.9
정리해고	11.2	17.6	19.1	18.0
권고사직	35.5	51.9	48.7	49.2
정년퇴직	8.3	3.3	1.9	2.9
기타	18.9	11.4	17.3	14.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직장을 이직하게 되는 이유는 성별, 연령별로 다를 것이다. <표 2-16>와 <표 2-17>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별 이직사유분포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① 남성과 여성 모두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 남성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이 49.2%이고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이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각각 49.9%와 18.7%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남성의 경우에 장년층보다 젊은층의 근로자들이 도산·폐업과 정리해고에 의해 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이직사유 분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③ 남성과 여성의 경우 이직사유 중 권고사직에 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성은 40~49세 연령층에서 권고사직의 비율이 가장 높고(55.8%), 그리고 여성은 30~39세 연령층에서 권고사직의 비율이 가장 높다(58.3%).

<표 2-16>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성별·연령별 이직사유분포 : 남성 (단위 : %)

연령 이직 사유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도산·폐업	17.6	18.7	13.8	8.3	14.9
정리해고	22.0	18.5	16.8	15.0	17.9
권고사직	45.6	49.3	55.7	45.6	49.2
정년퇴직	3.0	2.1	2.5	21.4	6.8
기타	11.8	11.5	11.2	9.7	1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표 2-17>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성별·연령별 이직사유분포 : 여성 (단위 : %)

연령 이직 사유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도산·폐업	13.0	12.8	20.2	15.7	14.8
정리해고	17.6	14.9	23.0	21.0	18.7
권고사직	53.6	58.3	43.0	38.7	49.9
정년퇴직	2.5	2.8	2.2	16.5	4.9
기타	13.3	11.2	11.5	8.1	1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 3.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근속기간 분포

이직과 함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경우 인정수급기간 동안 피보험자 개인이 받게되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및 급여에 관한 고용보험의 규정에 따라 이직하는 피보험근로자 개인의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다음과 같은 고용내력(employment history)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 즉,

- ① 기준기간 동안(18개월/12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12개월/6개월): (12개월/18개월, 6개월/12개월)
- ② 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급여기초임금일액 → 구직급여
- ③ 이직시의 연령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 ④ 이직시까지 축적된 피보험기간(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시의 연령과 피보험 근속기간의 매트릭스에 의해 소정수급기간이 정해지고 수급액은 개인의 이직전 직장에서의 임금에 의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의 총지출액은 위에서 언급한 연령·근속기간 매트릭스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의 분포 그리고 그 매트릭스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sup>5)</sup>

<표 2-18>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근속년수 빈도분포 (단위 :10명, %)

5) 단 이 예측이 일정정도 이상의 신뢰성을 가지려면, 첫째,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라는 인구집단이 자격획득에 의한 진입과 자격상실에 의한 퇴출이 불균형을 이루는 유동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상태로 접어들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의 진입에는 신규진입과 재진입이 있고 퇴출에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영구퇴출과 이직 등으로 인한 일시퇴출이 있다.

연령구분	근속년수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년 미만	1,964 (16.1)	1,633 (11.7)	1,080 (10.7)	923 (9.3)	5,600 (12.1)
1~3년 미만	5,431 (44.4)	3,875 (27.8)	2,387 (23.7)	2,321 (23.4)	14,014 (30.4)
3~5년 미만	2,343 (19.2)	2,030 (14.6)	1,222 (12.1)	1,258 (12.7)	6,853 (14.8)
5~10년 미만	2,189 (17.9)	3,498 (25.1)	1,709 (17.0)	1,648 (16.6)	9,044 (19.6)
10년 이상	305 (2.5)	2,893 (20.8)	3,680 (36.5)	3,763 (38.0)	10,641 (23.1)
전체	12,232 (100.0)	13,929 (100.0)	10,078 (100.0)	9,913 (100.0)	46,152 (100.0)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표 2-19>는 연령·근속년수 매트릭스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각각의 항(cell)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총수급자 가운데서 연령·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근속년수 매트릭스 분포에 따르면 근속년수 1~3년 미만이 전체 수급자의 약 30.4%, 10년 이상 근속자가 23.1%이고 나머지는 5~10년 미만이 19.6%, 3~5년 미만이 14.8%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39세가 30.2%, 30세미만이 26.5%로 40세 미만 연령층이 전체의 56.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급자들의 연령·근속년수 분포는 근속년수에 있어서의 1~3년 미만의 단기와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로 양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분포에 있어서는 1998년 이전에 비하여 40세 미만 연령층으로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19>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근속년수 매트릭스 분포 (단위 : %)

연령구분	근속년수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4.3	11.8	5.1	4.7	0.7	26.5
30~39세	3.5	8.4	4.4	7.6	6.3	30.2
40~49세	2.3	5.2	2.6	3.7	8.0	21.8
50세 이상	2.0	5.0	2.7	3.6	8.2	21.5
전체	12.1	30.4	14.8	19.6	23.1	100.0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표 2-20>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별 근속년수 분포를 보여준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에는 근속년수 1~3년 미만이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40~49세와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이 36.5%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0>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별 근속년수 분포 (단위 : %)

연령구분	근속년수					전체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16.1	44.4	19.2	17.9	2.5	100.0
30~39세	11.7	27.8	14.6	25.1	20.8	100.0
40~49세	10.7	23.7	12.1	17.0	36.5	100.0
50세 이상	9.3	23.4	12.7	16.6	38.0	100.0

자료: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 제 3절 실업급여 수급현황 분석

#### 1. 실업급여 수급현황

현행 제도에서 구직(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이 있는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주간의 실업급여 인정 대기기간을 거쳐 매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수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수급요건이 발생한 후 즉시 신청하여 수급을 하지 않아도 제한된 10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sup>6)</sup>.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① 재취업이 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어떤 형태로든 재취업이 된 수급자들과 ② 소정 급여일수를 모두 수급한 급여소진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급여수급 및 재취업상의 지위별로 수급자집단을 재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2-21>과 같다. 여기서 수급종료자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급여수급자중 재취업자와 급여소진자를 포함하며, 수급기간 10개월이 경과되어 남은 인정수급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이 종료된 자들도 포함된다.

6) 임신, 출산, 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 등의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표 2-21>에서 급여미소진·미취업자들은 아직 수급중인 자들을, 급여소진·재취업자들은 급여수급 중 재취업한 자들을 나타낸다. 또한 급여소진·미취업자들은 급여를 소진하고 아직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급여소진·재취업자들은 급여를 소진한 후 아직 현재는 재취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나타낸다. 급여소진-미취업자들 중에는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사람들이 상당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추측된다.

1997년 7월~1998년 12월 사이에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 중 현재 실업급여의 수급종료가 된 수급자들(b+c+d)의 비율은 65.2%이다. 이 중 급여소진(c+d)으로 인한 종료자는 54.9%이고 재취업으로 인한 종료자는 10.3%로 급여소진으로 인한 종료자의 비율이 거의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 27%는 아직까지 수급중이다.

수급자 중 현재까지 재취업자(b+d)의 비율은 약 16.7%이고 미취업자(a+c)의 비율은 75.3%이다<sup>7)</sup>. 급여를 소진하고 아직 재취업이 안 된 비율이 전체 수급자의 48.5%에 이르고 이 비율은 여성(52.2%)가 남성(46.8%)보다 약 5%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급자 중 급여소진자의 비율이 50%이상이고, 소진자의 대부분이 아직 미취업상태라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재취업효과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표 2-21>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소진·재취업 여부에 따른 분류분포

(단위 : %)

분 류		남성	여성	전체
급여미소진	미취업(a)	26.6	27.3	26.8
	재취업(b)	11.7	6.9	10.3
급여소진후	미취업(c)	46.8	52.2	48.5
	재취업(d)	7.0	5.1	6.4
미수급(e)		7.8	8.4	8.0
전 체		100.0	100.0	100.0

<표 2-22>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수급진행상태별 분포를 월별 추이로 보여 준다. 수급진행상태는 ① 재취업으로 인한 급여종료 상태 ② 소정수급기간만큼 수

7) 그러나 이 재취업률은 고용보험DB상의 재취업정보에 의한 것으로 재취업이 된 상태인데 등록이 안 된 사례들이 일정 비율 존재할 것을 고려한다면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소진 후 재취업을 한 사람들 중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만이 고용보험 DB상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은 통계에서 누락되는 것도 고려한다면 재취업률은 그보다 더 하향추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급완료 상태 ③ 수급이 아직 미완료된 상태 ④ 수급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예상대로 최초실업인정후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종료자 및 급여소진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수급미완료 및 미개시자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 7~12월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들의 급여소진율이 매월 50%를 넘고, 1998년의 경우는 약 매월 60%를 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소정급여일수 소진율은 평균 약 6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2> 월별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진행상태별 분포 (단위 : %)

	최초 실업인정 연-월								
	97-7	97-8	97-9	97-10	97-11	97-12	98-1	98-2	98-3
급여종료**	22.0	23.6	19.1	15.9	13.7	11.9	14.8	15.1	11.3
급여소진	52.3	56.1	56.6	60.9	67.0	65.0	71.9	71.5	74.6
수급 미완료	12.5	9.4	12.0	11.9	10.2	13.7	8.2	7.4	7.8
수급 미개시	13.3	10.9	12.3	11.3	9.1	9.5	5.2	6.0	6.3

	98-4	98-5	98-6	98-7	98-8	98-9	98-10	98-11	98-12
급여종료**	9.8	8.9	8.7	9.4	11.6	11.6	9.7	7.7	4.1
급여소진	77.5	77.7	79.6	75.7	68.7	52.3	28.2	8.3	-
수급 미완료	6.6	7.0	6.1	8.5	13.8	30.1	54.8	75.7	86.1
수급 미개시	6.1	6.4	5.7	6.5	5.9	6.0	7.3	8.2	9.8

\*\* : 급여종료는 급여미소진자 중 재취업에 의해 급여가 종료된 경우임.

## 2. 실업급여 수급액

### 가. 급여기초임금일액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법(제 35조)의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이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실업급여 수급권자들의 성별·연령별 급여기초임금일액을 <표 2-23>에 제시한다. 또한 이 추정액수는 우리나라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이직하는 이직근로자 중 실업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이직자들의 평균임금수준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표 2-23>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성별·연령별 급여기초임금일액 (단위 : 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남 성	41,943	55,784	59,463	53,215	53,515
여 성	39,729	47,803	30,887	28,567	37,696
전 체	40,793	54,269	52,172	47,186	48,718

<표 2-24>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별·근속년수별 급여기초임금일액

• 남성 (단위 : 원)

연령구분	근 속 기 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37,169	41,065	45,036	50,006	57,217
30~39세	50,020	51,403	53,534	59,330	63,721
40~49세	49,157	52,876	53,747	59,705	66,234
50세 이상	41,046	42,435	42,279	47,517	65,406
평 균	44,624	46,712	49,343	56,527	65,306

• 여성 (단위 : 원)

연령구분	근 속 기 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31,234	33,843	38,997	49,477	59,920
30~39세	29,374	31,237	36,820	49,851	65,674
40~49세	24,350	26,211	27,914	31,127	48,903
50세 이상	23,263	24,161	25,638	29,159	40,903
평 균	28,441	30,557	34,157	42,593	56,816

우선 수급권자들의 전체 평균은 약 48,718원으로 약 5만원 수준이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150만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sup>8)</sup> 급여기초임금액을 남녀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은 53,515원으로 약 5만 4천원이고 여성의 평균은 37,696원으로 약 3만 8천원 수준이다. 따라서 남성 수급권자의 임금일액이 여성 수급권자의 임금일액보다 약 1.4배 정도 많다.

전체 연령별로는 30~39세의 임금일액이 가장 많은데 이를 성별로 분리추정해 보면 남성의 경우는 40~49세가 여성의 경우는 30~39세가 임금일액의 가장 높은 연령계층이다. 또한 임금일액의 수준에 있어서 연령계층별 수준의 차이는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

8) 1999년 2월 현재 우리나라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51만원이다.

만 6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 <표 2-24>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근속기간별 평균 급여기초임금일액을 보여준다.

나. 구직급여일액

급여기초임금일액에 기초하여 추정된 소정 구직급여일액은 수급권자 전체 평균이 약 2만 4천원으로 추정되며 남성은 평균 약 2만 7천원, 여성은 평균 약 1만 9천원이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성별·연령별·근속기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5>에 의하면 연령계층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는 40~49세가 약 3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는 다르게 30~39세가 2만 4천원으로 가장 높다. 기본급여액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연령이 많을수록 급격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40세 미만에서는 남녀간의 기본급여액의 비율이 약 86~95% 정도이나 4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기본급여액이 남성의 기본급여액에 52~5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연령·근속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6>에서는 기초임금일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연령·근속년수별 구직급여일액을 성별로 제시한다.

<표 2-25>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성별·연령별 구직급여일액 (단위 : 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남 성	20,971	27,892	29,731	26,607	26,757
여 성	19,864	23,901	15,443	14,283	18,848
전 체	20,396	27,134	26,086	23,593	24,359

<표 2-26>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연령별·근속년수별 구직급여일액

• 남성 (단위 : 원)

연령구분	근 속 기 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25세 미만	18,584	20,532	22,518	25,003	28,608
25~29세	25,010	25,701	26,767	29,665	31,860
30~49세	24,578	26,438	26,873	29,852	33,117
50세 이상	20,523	21,217	21,139	23,758	32,703
평 균	22,312	23,356	24,671	28,263	32,653

• 여성 (단위 : 원)

연령구분	근 속 기 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25세 미만	15,617	16,921	19,498	24,738	29,960
25~29세	14,687	15,618	18,410	24,925	32,837
30~49세	12,175	13,105	13,957	15,563	24,451
50세 이상	11,631	12,080	12,819	14,579	20,451
평 균	14,220	15,278	17,078	21,296	28,408

<표 2-27>에서는 1997년 7월~1998년 12월 사이의 수급자 중 구직급여일액별 분포를 보여준다. 현재 구직급여일액은 최고액이 3만 5천원, 최저액이 최저임금의 50%로 되어 있다. 따라서 3만원~3만 5천원 이하 범주에 34.6%가 몰려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수급자의 약 35%가 최고액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면 5천원 이하는 0%, 1만원 이하가 3.8%로 수급자의 약 3.8%는 급여일액이 1만원 이하, 월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급여일액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1만원 이하	1.5만원 이하	2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3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인원	46,189	1,755	6,909	7,963	7,627	5,962	15,973
비율	100.0	3.8	15.0	17.2	16.5	12.9	34.6

#### 다. 실업급여 수급액

그렇다면 실제로 급여를 수급한 수급자들의 수급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 <표 2-28>은 현재 급여수급이 종료된 남녀 수급자들이 구직급여 실제 총수급액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① 소정급여일수를 다 소진한 경우와 ② 수급중 재취업이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총수급액은 (기본급여액×총수급일수)로 결정되므로 기본급여액 및 총수급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각 특성(연령, 성별)집단의 총수급액은 차이를 보인다.

전체 수급종료자들의 구직급여 평균 총수입액은 약 236만원이고, 총수급액을 성별 평균으로 보면 남성은 약 263만원, 여성은 약 175만원으로 남성이 약 88만원정도 더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미만 계층의 총수급액이 평균 약 149만원에 그친데 비해서 30~39세 연령층이 평균 약 260만원, 40~49세 연령층은 평균 약 250만원, 50세 이상은 약 295만원에 이르고 있어 연령계층에 따른 총수급

액의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여성수급자의 연령분포중 40~49세과 50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총수급액은 약 159만원, 195만원인데 비해 같은 연령층의 남성 수급자들은 평균 약 284만원, 327만원을 수급하고 있어 고연령층일수록 성별 평균 총수급액 차이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구직급여 총수급액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연령별 차이는 각 특성계층의 평균임금, 근속년수 등의 수준차이에 의한 것으로 같은 연령계층일지라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8>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총구직급여수령액 : 성별·연령별 (단위 : 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남 성	1,503,423	2,659,184	2,837,658	3,269,733	2,627,440
여 성	1,467,209	2,344,907	1,590,387	1,949,540	1,748,666
전 체	1,485,493	2,597,382	2,503,244	2,953,784	2,364,595

<표 2-29>는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평균 조기재취직수당 수령액을 추산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이 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자’로 분류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불하는데 그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기본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sup>9)</sup>.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 가운데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한 사람과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수급종료자 전체평균을 낼 수 있고, 수당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평균을 낼 수 있다. 전체 수급종료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5만 9천원으로 추정된다. 액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큰데 남성 수급자는 평균 약 7만 7천원을, 여성 수급자는 평균 약 1만 8천원을 조직재취직수당으로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집단의 액수차이가 뚜렷하다. 즉 30세 미만의 평균수령액은 약 2만 9천원인데 30~39세의 평균수령액은 약 9만 4천원, 40~49세와 50세 이상의 수령액은 약 5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30~39세의 조기재취직수당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재취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인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표

9)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90일, 기본급여일액이 3만원인 자가 30일분의 기본급여를 수급하고 재취직한 경우 조직재취직수당은  $(60 \times 1/2) \times 30,000 = 900,000$ 이 된다. 참고로 1997년부터는 잔여급여의 3분의 1이 2분의 1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2-30>에서는 구직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수급총액의 성별·연령별 평균을 보여준다. 수급종료자들의 평균 총수급액은 약 242만원으로 추산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총수급액은 약 270만원, 여성의 평균 총수급액은 약 177만원 정도로 남성의 수급액이 여성의 수급액보다 약 93만원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수급자가 약 151만원, 30~39세 수급자가 269만원, 40~49세 수급자가 약 259만원, 50세 이상 수급자가 약 300만원을 각각 실업급여로 수급하였다.

<표 2-29>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성별·연령별 평균 조기재취직수당 수령액  
(단위 : 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남 성	40,244	110,970	68,583	65,077	77,153
여 성	17,316	22,219	17,426	13,175	17,604
전 체	28,892	93,517	54,867	52,656	59,342

<표 2-30>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성별·연령별 실업급여수급총액 (단위 : 원)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 체
남 성	1,543,697	2,770,268	2,906,329	3,334,810	2,704,659
여 성	1,484,526	2,367,126	1,607,813	1,962,716	1,766,271
전 체	1,514,400	2,690,991	2,558,175	3,006,440	2,423,983

### 3. 실업급여 수급기간

현 제도하에서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게 되므로 총수급기간은 급여연장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정급여일수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 실업급여수급자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 급여를 수급하는가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급이 완료된 후에야 추정이 가능하다. 수급완료는 자발적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① 수급기간 동안의 재취직의 경우와 ② 소정급여의 소진 두 경우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수급자들의 평균수급기간은 소정급여일수(60~210일)를 고정할 경우 소정 수급기간 동안의 재취직률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일정수의 수급자들(예: 100명)이 최악의 경우 수급 중 0%의 조기 재취업률을 보이고 모두 기본급여를 소진하게 되었을 경우 평균 수급기간은 120일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100명 전원이 소정수급기간 동안에 재취직이 되었을 경우 평균 수급기간은 120-a로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취업까지의 평균 실업기간이 짧을수록 평균수급기간은 짧게 될 것이다.

<표 2-31>에서는 실업급여가 종료된 수급자들의 평균 총수급일수를 성별·연령별로 보여준다. 수급 1년의 자료분석에 의한 수급자 총평균수급일은 약 105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여성의 평균수급기간이 약 102일, 남성의 평균수급기간은 약 107일로 남성의 수급기간이 약 5일 정도 긴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 연령층이 평균 약 81일, 30~39세 연령층이 약 106일, 40~49세 연령층이 약 108일, 50세 이상 연령층이 약 132일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정급여일수보다 총수급기간이 긴 것은 개별 및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수급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2-31>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성별·연령별 평균 총수급기간 (단위 : 일)

	30세 미만 (60일)	30~39세 (60일)	40~49세 (90일)	50세 이상 (120일)	전 체
남 성	80.11	104.67	107.96	131.16	107.01
여 성	81.73	109.98	109.37	135.91	102.19
전 체	80.91	105.72	108.34	132.29	105.57

주) 소정급여일수보다 평균 총수급기간이 긴 것은 개별 및 특별연장급여를 받은 수급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근속년수에 따른 평균수급기간은 어떠한가? <표 2-32>에서는 연령·근속년수별 평균 총수급기간을 보여준다. 현재는 고용보험시행 4년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피보험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수급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수급일을 넘지 못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집단 내에서도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총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32>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연령별·근속년수별 평균 총수급기간 (단위 : 일)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년 미만	78.22	95.52	97.50	112.43	92.44
1~3년 미만	78.57	102.24	104.87	127.62	97.32
3~5년 미만	83.47	104.68	106.66	132.48	102.83
5~10년 미만	86.33	108.89	110.93	133.84	109.03
10년 이상	90.12	113.26	112.92	138.46	121.76
전 체	80.91	105.72	108.34	132.29	105.57

<표 2-33>에서는 남성과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평균 총수급기간을 연령·근속기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하여 보아도 근속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일정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10년이상이면서 연령이 50세 이상인 여성의 수급기간이 약 140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근속기간 10년의 50세 이상 남성의 총수급기간이 약 138일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연령·근속기간별 총수급기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2-33>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들의 평균 총수급기간 : 연령·근속기간별

• 남성

(단위: 일)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년 미만	78.22	95.99	95.99	108.58	92.60
1~3년 미만	79.19	101.62	104.15	124.18	97.99
3~5년 미만	83.34	104.33	105.06	130.03	103.47
5~10년 미만	83.30	107.66	109.42	131.01	110.53
10년 이상	86.00	112.15	112.59	138.27	122.77
전체	80.11	104.67	107.96	131.16	107.01

• 여성

(단위 : 일)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년 미만	78.22	92.96	101.51	122.06	92.04
1~3년 미만	77.73	104.89	106.04	135.12	95.97
3~5년 미만	83.60	107.18	109.33	137.15	101.52
5~10년 미만	87.17	118.62	113.75	138.73	106.32
10년 이상	91.20	115.07	115.36	140.05	117.69
전체	81.73	109.98	109.37	135.91	102.19

제 4절 수급동기별 수급통계분석

1. 수급동기(Benefit Cohort)별 실업급여 수급통계

본 절에서는 일정시점에 수급을 시작한 수급동기(cohort)를 중심으로 추적관측(follow-up survey)을 하였다. 이러한 코호트 중심의 관측방법은 횡단적(cross-sectional) 관측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이내믹한 수급통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수급자들의 재취업률은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 기준그룹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은 일정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코호트 중심의 관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수급동기는 최초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월별로 구성하였다. 최초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후가 되는 날로써 대기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따라서 최초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수급받게 되므로 동기(cohort)를 최초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

<표 2-34> 실업급여 수급년월(동기)별 분포

(단위 :10명, %)

수급 년월(동기) 구분	빈도	비율
1997. 7.	369	0.8
8.	449	1.0
9.	440	1.0
10.	478	1.1
11.	373	0.8
12.	791	1.8
1998. 1.	1,863	4.1
2.	3,085	6.8
3.	4,121	9.1
4.	3,756	8.3
5.	3,160	7.0
6.	3,162	7.0
7.	3,712	8.2
8.	3,979	8.8
9.	4,173	9.3
10.	3,668	8.1
11.	3,997	8.9
12.	3,495	7.8
전체	45071	100.0

수급동기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18개 동기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34>에서는 수급년월별 수급동기들의 숫자 및 비율을 보여준다. 수급동기별 분포는 1998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각 동기별로 7~9%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97년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한 때문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이 기업의 폐업·도산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가. 수급동기들의 특성분석

### 1) 수급동기별 성비(sex ratio)추이

<표 2-35>는 수급동기별 성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급자의 성비는 전체평균으로 보면 남성이 약 70%, 여성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수급자의 비율은 최저 23.2%(1997. 10)에서 최고 34.5%(1998. 12)까지 변화를 보이고 있어 여성수급자가 남성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전체 피보험자의 성비와 전체 고용보험 이직자의 성비와 비교하여 보면, 수급자의 성비가 전체 피보험자에 비해서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체 이직자의 여성비율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서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비율을 살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1998년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입직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의 성비가 약 67% : 33%(남성:여성)로 나타난다.

<표 2-35> 수급동기별 성분포

(단위 : %)

수급동기	97.7.	97.8.	97.9.	97.10.	97.11.	97.12.	98.1.	98.2.	98.3.	98.4.
여성	24.4	33.7	25.9	23.2	24.9	26.5	24.4	27.5	31.7	33.1
남성	75.6	66.3	74.1	76.8	75.1	73.5	75.6	72.5	68.3	6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급동기	98.5.	98.6.	98.7.	98.8.	98.9.	98.10.	98.11.	98.12.	전체
여성	29.7	31.0	29.8	28.3	29.7	31.4	33.3	34.5	30.4
남성	70.3	69.0	70.2	71.7	70.3	68.6	66.7	65.5	69.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36>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 중의 성비율(1997.7 ~1998.12)

(단위 : %)

성 별	피보험자 중 비율	이직자 중 비율	수급자 중 비율
남 성	72.3	66.6	69.6
여 성	27.7	33.4	30.4

2) 수급동기별 연령구성 추이

수급동기들의 평균 연령구성비(표 2-37)를 보면 30세 미만은 26.6%, 30~39세가 30.2%, 40~49세가 21.7%, 50세 이상이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 2-38>의 고용보험 사업장의 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이 44.5%, 30~39세가 26.8%, 40~49세가 15.9%, 50세 이상이 1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7> 수급동기별 연령분포 (단위 : %)

수급 동기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997. 7.	7.9	26.6	27.4	38.2	100.0
8.	10.5	24.8	25.0	39.7	100.0
9.	9.1	24.8	25.0	41.1	100.0
10.	9.0	26.2	29.7	35.1	100.0
11.	14.5	27.6	24.4	33.5	100.0
12.	14.7	24.7	27.1	33.5	100.0
1998. 1.	14.7	27.5	26.5	31.4	100.0
2.	19.3	29.8	24.7	26.3	100.0
3.	22.1	31.1	24.3	22.5	100.0
4.	23.9	30.3	23.9	21.9	100.0
5.	24.6	28.8	23.8	22.8	100.0
6.	26.7	29.3	21.5	22.5	100.0
7.	27.8	30.1	21.4	20.7	100.0
8.	29.0	31.8	19.5	19.7	100.0
9.	33.3	30.7	18.7	17.3	100.0
10.	32.4	31.5	18.6	17.5	100.0
11.	34.4	31.1	19.1	15.5	100.0
12.	34.7	32.7	17.5	15.1	100.0
전체	26.6	30.2	21.7	21.5	100.0

수급동기들의 연령계층별 비율은 1998년 1월까지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점차 30세 미만 연령층과 30~39세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8년 12월에는 30세 미만이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0~39세 32.7%, 40~49세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8>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 중 연령계층의 비율 (단위 : %)

연 령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비율	고용보험 이직자 중 비율	실업급여 수급자 중 비율
30세 미만	37.3	44.5	26.6
30~39세	33.6	26.8	30.2
40~49세	19.0	15.9	21.7
50세 이상	10.1	12.9	21.5

### 3) 수급자들의 근속년수 분포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이직자의 비율을 보면(표 2-39) 전체 이직자의 37.6%가 근속기간 1년 미만, 29.1%가 1~3년 미만으로 전체의 66.7%가 근속년수 3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수급동기의 근속기간분포를 보면 1년 미만이 12.1%, 1~3년 미만이 30.6%, 3~5년 미만이 14.9%, 5~10년 미만이 19.8%, 10년 이상이 2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2-3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직자 중 9.5%에 지나지 않는 10년 이상의 근속자들이 수급자들 가운데서는 22.6%나 차지하고 있어서 수급자 중 장기근속자들이 다른 단기근속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30세 전후의 연령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이직자군에서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넓거나 비자발적 이직 비율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9>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 중 근속기간 분포 (단위 : %)

근 속	피보험자 중 비율	이직자 중 비율	수급자 중 비율
1년 미만	53.1	37.6	12.1
1~3년 미만		29.1	30.6
3~5년 미만	12.8	12.2	14.9
5~10년 미만	18.6	11.6	19.8
10년 이상	15.5	9.5	22.6

<표 2-40> 수급동기별 근속년수 분포 (단위 : %)

경 력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전체
1997. 7.	6.2	26.3	10.0	16.3	41.2	100.0
8.	3.1	25.2	10.9	20.1	40.6	100.0
9.	5.0	23.7	12.5	17.8	41.0	100.0
10.	6.1	26.2	10.9	24.5	32.4	100.0
11.	9.9	24.4	11.8	24.9	29.0	100.0
12.	9.3	32.7	12.6	17.8	27.7	100.0
1998. 1.	7.5	33.0	16.1	17.6	25.8	100.0
2.	6.5	32.0	16.3	19.2	26.0	100.0
3.	7.6	31.4	14.1	21.5	25.4	100.0
4.	9.7	30.1	14.9	19.8	25.6	100.0
5.	10.1	29.0	13.4	19.4	28.1	100.0
6.	12.4	28.4	14.8	20.1	24.4	100.0
7.	13.7	30.0	14.7	18.2	23.5	100.0
8.	16.4	31.0	14.8	18.1	19.6	100.0
9.	15.4	32.7	15.3	18.8	17.7	100.0
10.	14.1	32.4	15.6	20.0	18.0	100.0
11.	15.9	29.3	16.2	22.8	15.8	100.0
12.	16.6	30.6	15.9	20.4	16.5	100.0
전체	12.1	30.6	14.9	19.8	22.6	100.0

#### 4) 수급동기들의 학력분포

<표 2-41>는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 중 학력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직자들 가운데서도 고졸자가 56.4%, 중졸자는 12.3%, 초등졸이 5.3%로 고졸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졸자들의 경우 피보험자 가운데서는 2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직자 중 비율은 16.2%로 다른 학력계층에 비하여 이직률이 낮은 반면 수급자 가운데서는 약 21.5%를 차지하고 있다. 고졸자들이 4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졸자들이 13.9%,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7.9%를 차지하여 고졸이하가 전체 수급자의 68.8%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졸은 9.6%, 대졸 이상은 21.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2>의 수급동기들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1997년에서 1998년 상반기·하반기로 진행될수록 초등졸·중졸의 저학력자들의 비율은 낮아지고,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1>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 중 학력계층 분포 (단위 : %)

학 력	피보험자 중 비율	이직자 중 비율	수급자 중 비율
초등졸	4.6	5.3	7.9
중등졸	11.1	12.3	13.9
고등졸	51.2	56.4	47.0
전문대졸	10.5	9.7	9.6
대졸 이상	22.6	16.2	21.5

<표 2-42> 수급동기들의 학력분포

(단위 : %)

학 력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1997. 7.	12.2	21.7	45.3	6.0	14.9	100.0
8.	17.4	18.5	44.6	4.9	14.5	100.0
9.	12.5	21.8	47.3	6.4	12.0	100.0
10.	13.2	19.5	42.3	6.1	19.0	100.0
11.	10.2	17.4	46.6	6.4	19.3	100.0
12.	12.5	21.2	46.1	6.2	13.9	100.0
1998. 1.	11.6	20.9	42.0	6.7	18.8	100.0
2.	9.4	16.9	42.6	9.2	21.9	100.0
3.	8.8	14.2	45.9	9.0	22.1	100.0
4.	8.8	15.8	45.1	9.0	21.3	100.0
5.	8.0	14.8	46.6	9.6	20.9	100.0
6.	9.0	13.9	47.0	9.1	21.0	100.0
7.	7.4	13.8	45.9	10.7	22.2	100.0
8.	7.2	12.6	47.1	11.1	21.9	100.0
9.	6.3	11.9	48.6	10.7	22.5	100.0
10.	6.2	12.0	47.5	10.5	23.8	100.0
11.	5.2	9.5	52.0	9.9	23.4	100.0
12.	5.8	10.0	51.6	11.2	21.3	100.0
전체	7.9	13.9	47.0	9.6	21.5	100.0

#### 5) 수급동기들의 직종분포

<표 2-43>에서 수급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사무직(25.6%)이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23.1%)과 기능원(19.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 중 단순노무직의 비율은 피보험자나 이직자들 중의 비율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반대로 수급자 중 기능원이나 장치·조립원의 비율은 피보험자나 이직자의 비율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표 2-44>는 수급동기별 직종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단순노무직이 97년 하반기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은 98년 하반기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3>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 중 직종분포

(단위

: %)

직 종	피보험자 중 비율	이직자 중 비율	수급자 중 비율
임직원·관리자	5.5	4.4	5.7
전문가	4.7	3.4	4.1
준전문가·기술공	9.8	8.2	10.7
사무직	29.8	25.9	25.6
서비스·판매직	8.9	10.2	6.6
농업·어업 근로자	0.3	0.5	0.6
기능원	23.0	23.2	19.3
장치·조립원	6.3	7.7	4.4
단순노무직	11.6	16.7	23.1

<표 2-44> 수급동기들의 직종분포

(단위 : %)

직 업	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근로자등	농업·어업	기능원	조립원	단순노무직	전체
1997. 7.	10.5	0.8	7.3	15.3	4.0	0.8	22.6	4.0	34.7	100.0
8.	8.2	2.9	4.7	18.2	6.5	1.2	18.8	4.7	34.7	100.0
9.	7.0	2.1	4.9	16.8	7.0	0.7	22.4	8.4	30.8	100.0
10.	7.9	2.6	8.6	21.7	7.9	0.7	20.4	4.6	25.7	100.0
11.	6.4	1.1	11.7	20.2	5.3	0.0	18.1	1.1	36.2	100.0
12.	3.4	2.4	10.1	17.8	6.3	1.4	22.6	6.7	29.3	100.0
1998. 1.	4.6	3.4	10.1	20.8	3.0	0.4	24.9	4.6	28.1	100.0
2.	6.2	4.8	11.1	24.3	5.8	0.3	20.6	4.6	22.4	100.0
3.	5.7	3.3	11.5	27.2	5.9	0.1	17.4	5.3	23.5	100.0
4.	5.1	5.3	10.7	25.9	7.2	0.5	19.4	3.8	22.1	100.0
5.	6.1	4.3	13.4	24.6	8.2	0.6	18.5	4.3	19.8	100.0
6.	4.8	3.3	9.4	27.2	5.6	1.5	18.3	4.1	25.7	100.0
7.	6.1	5.0	12.5	26.4	8.1	1.0	16.5	4.3	20.1	100.0
8.	4.1	3.4	10.4	27.9	10.0	0.8	18.2	4.1	21.2	100.0
9.	6.2	6.4	13.4	26.6	6.2	0.2	20.0	3.6	17.5	100.0
10.	6.7	5.3	10.0	30.3	6.7	1.1	18.9	1.9	19.2	100.0
11.	4.5	2.8	6.2	40.3	5.5	1.0	16.6	4.8	18.3	100.0
12.	7.3	2.8	9.2	25.7	6.4	0.9	18.3	3.7	25.7	100.0
전 체	5.7	4.1	10.7	25.6	6.6	0.6	19.3	4.4	23.1	100.0

6) 수급동기들의 종사사업장의 규모분포

<표 2-45>에서는 수급동기들의 종사사업장의 규모분포를 보여주는데, 수급자

의 약 41%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들이고 약 59%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었다. 구체적으로 30인 미만인 11.0%, 30~99인이 27.1%, 100~299인이 20.9%, 300~999인이 15.8%, 1,000인 이상이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직자의 비율은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6>의 분석결과를 보면, 1998년 하반기로 진행될수록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단위가 98년 5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98년 10월에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표 2-45> 피보험자, 이직자, 수급자들의 종사사업체의 규모분포 (단위 : %)

학 령	피보험자 중 비율	이직자 중 비율	수급자 중 비율
30인 미만	17.1	17.0	11.0
30~99인	21.9	29.4	27.1
100~299인	19.7	23.5	20.9
300~999인	7.2	13.7	15.8
1000인 이상	25.6	16.4	25.2

<표 2-46> 수급동기들의 종사사업장의 규모분포 (단위 : %)



규 모	30인 미만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전체
1997. 7.	2.7	25.2	28.5	24.4	19.2	100.0
8.	5.8	23.6	26.7	19.6	24.3	100.0
9.	7.3	30.9	16.8	12.7	32.3	100.0
10.	5.9	28.7	22.2	13.4	29.9	100.0
11.	5.9	28.7	26.3	12.3	26.8	100.0
12.	6.3	31.9	24.7	14.8	22.4	100.0
1998. 1.	6.0	33.5	26.6	19.2	14.7	100.0
2.	5.7	30.9	25.1	17.7	20.5	100.0
3.	5.4	29.8	22.4	16.8	25.6	100.0
4.	4.4	30.0	22.3	17.5	25.9	100.0
5.	4.7	28.2	20.9	16.1	30.3	100.0
6.	6.2	30.3	23.6	18.0	22.0	100.0
7.	8.7	30.6	21.2	16.1	23.4	100.0
8.	14.3	26.3	22.4	14.9	22.0	100.0
9.	16.5	24.9	20.7	13.3	24.6	100.0
10.	18.9	21.8	14.9	16.0	28.4	100.0
11.	18.5	20.7	16.0	13.5	31.3	100.0
12.	21.2	21.3	16.5	13.4	27.7	100.0
전체	11.0	27.1	20.9	15.8	25.2	100.0

#### 7) 수급동기들의 이직사유분포

<표 2-47>를 보면 전 이직자들 가운데 자발적 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61.6%,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은 12.7%, 사업장의 폐업·도산에 의한 이직은 6.3%, 정리해고에 의한 이직은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와 같은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이 전 이직자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7> 이직자, 수급자 중 이직사유분포 (단위 : %)

	이직자 중 비율	수급자 중 비율
자발적 이직	61.6	-
권고사직	12.7	49.3
사업장의 폐업·도산	6.3	15.1
정리해고	5.7	18.2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 만료	3.3	6.3
기타	10.4	11.1

<표 2-48>는 수급동기들의 이직사유분포를 보여준다. 수급동기자들의 이직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평균 49.3%이며 그 다음은 '정

리해고'가 1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폐업·도산'은 15.1%, '정년퇴직 및 계약기간 만료'는 6.3%를 차지하고 나머지 11.1%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자들이다. 권고사직의 비율은 98년 상반기에 50%이상으로 높아졌다가 98년 하반기에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리해고의 비율은 98년 하반기로 갈수록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년퇴직·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8> 수급동기들의 이직사유분포 (단위 : %)

이직사유	권고사직	폐업·도산	정리해고	정년퇴직, 계약만료	기타	전체
1997. 7.	33.9	22.2	11.4	21.1	11.4	100.0
8.	28.1	26.3	14.3	19.0	12.3	100.0
9.	32.7	23.6	13.4	10.2	20.0	100.0
10.	39.3	23.2	12.8	11.9	12.8	100.0
11.	39.7	23.9	9.9	13.1	13.4	100.0
12.	38.7	23.3	13.3	9.9	14.8	100.0
1998. 1.	40.4	23.3	17.5	11.8	7.0	100.0
2.	47.8	18.8	18.7	9.0	5.7	100.0
3.	54.2	16.3	17.8	4.9	6.7	100.0
4.	55.9	14.0	17.7	5.9	6.5	100.0
5.	53.5	12.6	16.4	5.5	11.9	100.0
6.	55.2	13.3	17.3	5.4	8.9	100.0
7.	50.8	15.7	17.3	5.9	10.4	100.0
8.	48.8	14.0	19.6	6.6	10.9	100.0
9.	51.9	10.7	20.2	4.9	12.4	100.0
10.	47.9	12.8	19.6	4.4	15.2	100.0
11.	43.0	15.1	21.3	4.8	15.8	100.0
12.	49.7	11.6	18.3	4.2	16.2	100.0
전체	49.3	15.1	18.2	6.3	11.1	100.0

#### 나. 수급동기별 실업급여 수급현황 분석

##### 1) 수급동기별 수급상황 분포

수급자들의 수급진행상황은 먼저 수급종료자와 수급이 진행중인 자로 나눌 수 있는데 수급종료는 다시 소정급여일수를 다 수급한 수급소진자와 재취업에 의해 수급이 종료된 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업의 인정을 받고 수급을 미개시한 자들이나 수급대기기간 중 재취업이 되어 수급을 시작하지 않은 자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진행상황에 따라서 ① 수급소진자, ② 수급종료자, ③ 수급

중인 자, ④ 수급미개시자 등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49> 수급동기별 수급진행상황 분포

(단위 : %)

	수급종료	수급소진	수급 중	수급 미개시	전체	
1997. 7	33.8	51.5	0	14.6	100.0	
8.	33	56.1	0	10.9	100.0	
9.	31.1	56.6	0	12.3	100.0	
10.	28	60.7	0	11.3	100.0	
11.	25.4	65.4	0	9.1	100.0	
12.	26.7	63.9	0	9.5	100.0	
1998. 1.	25.5	69.3	0	5.2	100.0	
2.	26.5	67.5	0	6.0	100.0	
3.	34.8	57.8	1.0	6.3	100.0	
4.	37.7	35.2	21.1	6.1	100.0	
5.	30.7	23.2	39.7	6.4	100.0	
6.	25.6	18.4	50.3	5.7	100.0	
7.	21.8	17	54.8	6.5	100.0	
8.	19.7	17.2	57.2	5.9	100.0	
9.	16.6	17.3	60.1	6.0	100.0	
10.	13.7	12.5	66.6	7.3	100.0	
11.	9.4	4.5	77.8	8.2	100.0	
12	4.0	-	76.2	19.8	100.0	
전체	21.9	27.7	42.3	8.0	100.0	

<표 2-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만 하고 받지 않은 실업급여수급 자격 인정자의 비율은 평균 8%로 나타났는데, 1997년 하반기에 10%이상의 비율을 보이다가 1998년 들어 6%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단, 1998년 11월과 12월의 실업급여 미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것(각각 8.2%, 9.8%)은 분석자료가 1999년 1월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DB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비율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9년에도 고실업이 지속될 경우에는 미수급자의 비율을 6%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2) 수급동기들의 급여수급일수

수급동기별 급여수급일수는 연령별로는 소정급여일수가 가장 큰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107.8일로 가장 높으며, 30~39세가 85.7일, 40~49세가 87.2일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0> 수급동기별 · 연령별 인정일수 누계(수급종료자들+소진자들)(단위: 일)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전체
1997. 7	39.03	65.81	64.66	89.96	72.62
8.	31.74	71.14	70.63	93.52	75.77
9.	35.42	71.50	63.79	92.34	74.86
10.	35.51	70.04	75.84	90.38	75.81
11.	44.13	75.99	79.27	93.83	78.16
12.	42.01	74.84	76.82	93.69	76.86
1998. 1.	46.15	78.71	79.71	108.02	83.38
2.	44.03	79.41	80.15	110.78	81.01
3.	47.55	84.41	84.12	131.99	86.88
4.	54.84	106.05	108.54	141.12	102.12
5.	78.29	112.26	109.08	136.99	108.77
6.	88.75	114.96	111.78	137.98	112.47
7.	87.51	117.42	115.02	128.71	110.93
8.	88.91	108.34	105.16	117.67	103.92
9.	78.93	91.47	94.21	100.30	89.34
10.	61.47	72.32	77.63	76.57	70.53
11.	46.43	51.26	52.70	51.84	49.96
12.	25.55	27.10	27.11	27.10	26.57
전체	62.65	85.66	87.27	107.78	84.65

수급동기별 지급일수는 1998년 4월부터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98년 3월 이후 25세 미만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가 30일에서 60일로 바뀐 영향과 97년 말의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취업기회가 축소되어 수급이 길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1998년 7월15일부터 60일간 지급된 특별연장급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 수급동기들의 급여기초임금일액

<표 2-51> 수급동기들의 급여일액 추이

(단위 : 원)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997. 7.	28,566	39,954	56,346	56,526	51,564	53,126
8.	28,094	37,109	56,547	47,071	50,090	49,312
9.	30,623	44,424	57,440	51,927	54,893	53,486
10.	36,717	43,209	55,384	53,264	51,496	52,157
11.	37,439	47,149	54,298	53,942	47,920	50,752
12.	33,951	44,472	53,647	49,589	46,580	48,486
1998. 1.	33,303	43,416	53,818	51,675	49,677	50,059
2.	33,311	44,065	54,823	52,101	50,302	50,322
3.	35,205	45,698	55,358	52,464	47,125	50,030
4.	35,009	44,970	55,033	51,445	45,791	49,050
5.	34,441	43,967	55,496	53,805	47,822	49,846
6.	33,581	45,654	54,457	52,180	47,697	49,087
7.	32,708	43,696	53,711	51,367	48,137	48,355
8.	32,653	42,547	53,537	50,675	46,885	47,562
9.	34,182	41,982	53,187	50,287	44,812	46,519
10.	34,975	42,050	52,931	52,469	44,562	47,039
11.	35,623	44,566	54,088	52,844	42,792	47,778
12.	34,081	45,705	53,559	51,014	41,475	47,304
전체	34,192	43,955	54,208	51,857	46,993	48,608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일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액수이다(실업급여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의 2분의1). <표 2-51>은 수급동기들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규모를 보여준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25세 미만이 약 34,000원, 25세~29세가 약 44,000원, 30~39세가 약 54,000원, 40~49세가 약 52,000원, 50세 이상이 약 47,000원으로 전체 평균은 약 49,000원 정도이다. 또한 30세 미만 저연령층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0세 이상 고연령층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4) 수급동기들의 급여수급액 규모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연령별로 평균 어느 정도 액수의 급여를 받는가?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이 클수록 수급기간이 길수록 커지게 된다. <표 2-52>는 수급자들의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을 수급동기별로 보여준다. 구직급여 수급총액을 보면 25세 미만은 평균 87만원, 25~29세는 약 135만원, 30~39세는 약 218만원, 40~49세는 약 214만원, 50세 이상은 약 242만원을 수급하고 있다. 수급동기들의 전체평균은 약 196만원에 이르고 있다.

<표 2-52> 수급동기들의 구직급여 수급총액

(단위 : 원)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997. 7.	409,492	806,393	1,874,718	1,793,886	2,339,613	1,940,898
8.	332,243	650,744	2,023,601	1,587,177	2,376,063	1,901,266
9.	272,019	927,611	2,012,307	1,647,069	2,547,215	2,026,041
10.	357,012	821,879	1,915,505	2,010,228	2,360,545	1,991,954
11.	403,056	1,143,696	2,022,714	2,078,917	2,269,554	1,970,048
12.	375,526	1,042,396	1,948,446	1,897,285	2,147,290	1,845,919
1998. 1.	429,053	1,111,975	2,009,441	2,016,920	2,633,524	2,051,278
2.	405,069	1,095,479	1,095,479	2,037,016	2,704,767	2,007,278
3.	504,670	1,214,697	2,256,326	2,141,100	2,827,686	2,081,614
4.	717,734	1,292,440	2,626,222	2,513,614	2,875,656	2,300,354
5.	965,772	1,673,766	2,753,245	2,622,905	2,964,051	2,457,446
6.	1,171,755	1,881,193	2,785,097	2,596,054	2,995,479	2,493,537
7.	1,133,419	1,778,381	2,877,605	2,702,076	2,932,941	2,492,997
8.	1,180,931	1,776,375	2,702,219	2,514,589	2,748,015	2,350,816
9.	1,164,834	1,603,788	2,331,180	2,350,779	2,194,650	2,015,731
10.	966,884	1,303,355	1,871,115	2,034,384	1,660,206	1,641,839
11.	765,682	1,049,810	1,340,990	1,379,684	1,094,922	1,176,840
12.	431,179	593,024	726,522	703,665	580,104	636,550
전체	869,396	1,350,401	2,175,804	2,142,207	2,422,350	1,962,678

구직급여와 재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총수급액은 <표 2-53>에 제시되어 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총수급액의 차이는 10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서 총수급액의 크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급여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수급총액은 25세 미만이 약 88만원, 25~29세가 약 137만원, 30~39세가 약 224만원, 40~49세가 약 218만원, 50세 이상이 약 246만원 정도이고 전체 평균은 약 200만원 정도이다.

<표 2-53> 수급동기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취직촉진수당) 총수급액 (단위 : 원)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997. 7.	409,492	820,059	1,960,745	1,881,653	2,387,196	2,006,839
8.	347,658	668,876	2,092,305	1,675,992	2,423,061	1,960,989
9.	272,019	940,204	2,090,861	1,714,670	2,614,686	2,090,986
10.	357,012	828,869	1,993,926	2,038,937	2,414,846	2,040,558
11.	403,056	1,184,587	2,080,544	2,114,517	2,335,246	2,021,431
12.	383,990	1,085,635	2,000,525	1,922,201	2,195,862	1,887,011
1998. 1.	430,284	1,149,520	2,115,259	2,068,986	2,684,617	2,114,372
2.	413,783	1,134,719	2,176,783	2,097,431	2,758,283	2,070,377
3.	510,194	1,236,193	2,317,914	2,188,469	2,861,539	2,123,684
4.	729,614	1,317,693	2,688,851	2,544,217	2,904,643	2,338,162
5.	978,180	1,691,284	2,814,418	2,665,489	2,988,701	2,494,978
6.	1,177,946	1,900,808	2,839,823	2,628,257	3,016,556	2,525,436
7.	1,145,472	1,798,866	2,926,633	2,736,325	2,966,989	2,527,146
8.	1,199,285	1,799,952	2,770,894	2,557,432	2,766,817	2,391,077
9.	1,187,251	1,627,062	2,412,285	2,386,866	2,233,713	2,061,783
10.	983,396	1,323,925	1,936,017	2,061,525	1,704,770	1,681,318
11.	781,711	1,072,620	1,396,429	1,409,363	1,124,875	1,211,423
12.	435,296	596,637	737,042	711,978	581,079	642,904
전체	882,312	1,371,886	2,238,119	2,180,540	2,456,934	2,002,303

### 3. 수급동기들의 재취업실태 분석

#### 가. 수급동기들의 재취업률 추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있어서 재취업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급자들의 현재 고용상 위치는 재취업과 미취업으로 나눌 수 있고 재취업은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과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으로의 재취업으로 나눌 수 있다. 미취업자들은 실업상태와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눌 수 있다.

<표 2-54>을 보면 수급동기들의 재취업률은 이직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취업 증가율은 이직후 실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이직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재취업 증가율은 정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이직후 1년이 경과한 1998년 1월 수급동기부터 이직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1997. 7월 수급동기들의 재취업율은 평균 약 35%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표 2-54> 수급동기들의 재취업률 추이

(단위

: %)

	재취업	자영업	미취업	전체
1997. 7.	37.1	0.8	62.1	100.0
8.	41.2	0.7	58.1	100.0
9.	34.8	0.5	64.8	100.0
10.	33.5	0.4	66.1	100.0
11.	27.1	0.8	72.1	100.0
12.	27.8	0.1	72.1	100.0
'98.이직후 1년경과.	31.7	0.3	68.0	100.0
2.	31.3	0.5	68.2	100.0
3.	26.2	0.3	73.5	100.0
4.	22.3	0.3	77.4	100.0
5.	20.5	0.1	79.4	100.0
6.	17.8	0.3	81.9	100.0
이직후 6개월 경과.	17.6	0.4	82.0	100.0
8.	17.1	0.5	82.5	100.0
9.	15.0	0.2	84.8	100.0
10.	11.9	0.5	87.6	100.0
11.	9.4	0.3	90.4	100.0
12.	5.2	0.1	94.6	100.0
전체	19.1	0.3	80.6	100.0

#### 나. 수급동기들의 재취업까지 경과한 기간

수급자들의 재취업 정도는 수급자 중 재취업을 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지만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5>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현재까지 재취업을 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의 경과기간을 수급동기별로 보여준다. 25세 미만이 이직후 약 133일, 25~29세가 약 139일, 30~39세가 약 135일, 40~49세가 약 144일, 50세 이상이 약 155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취업까지 경과기간이 40세 이상이 40세 미만인 자들보다 다소 길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참고로 <표 2-56>은 수급자들의 종사 사업장의 업종분포를 수급동기별로 보여준다.

<표 2-55> 재취업자들의 재취업까지의 경과기간

(단위 :

일)



	25세 미만	2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1997. 7.	67.00	244.33	183.31	200.65	192.04	195.28
8.	228.00	242.60	204.46	190.50	201.42	203.49
9.	268.40	283.09	158.00	193.33	202.54	195.97
10.	204.33	132.08	172.42	191.43	196.63	182.94
11.	248.50	176.42	187.15	169.86	170.80	178.88
12.	177.57	212.81	197.58	200.26	178.34	196.25
1998. 1.	179.43	198.89	160.98	174.89	181.40	174.16
2.	130.16	156.22	166.26	158.82	162.88	159.89
3.	143.38	150.40	164.35	161.67	171.25	160.73
4.	167.73	153.45	144.99	153.99	172.30	155.20
5.	163.42	147.00	150.27	151.28	168.83	153.95
6.	160.71	150.34	115.60	137.56	143.32	136.55
7.	132.44	132.31	125.67	121.75	118.97	125.98
8.	115.86	113.02	98.81	50.44	122.64	97.45
9.	103.11	100.76	87.76	104.06	96.02	96.17
10.	98.12	97.53	89.83	80.26	89.79	91.68
11.	76.70	72.72	71.02	81.78	69.48	73.73
12.	93.05	78.29	45.09	75.71	62.76	64.54
전체	132.58	138.50	135.14	143.68	155.02	140.67

<표 2-56> 수급동기들의 종사 업종분포

(단위 : %)

직업	농업·수렵업 외	제조업	전기·가스 및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	운수·창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교육 서비스업	기타 공공사회서비스	전체
1997. 7.	1.6	56.4	7.0	8.7	7.9	8.4	7.3	0.8	1.9	100.0
8.	1.8	62.1	3.3	4.7	4.5	12.9	8.5	1.1	1.1	100.0
9.	1.1	65.2	6.4	5.9	2.7	9.5	8.0	0.5	0.7	100.0
10.	0.8	66.1	7.1	6.7	3.1	5.4	7.3	1.0	2.3	100.0
11.	1.9	62.2	5.9	8.0	2.9	7.8	7.5	2.1	1.6	100.0
12.	1.1	67.4	8.0	5.7	4.6	5.6	5.4	0.9	1.3	100.0
1998. 1.	0.8	67.0	10.8	5.9	3.9	2.4	6.4	0.6	2.3	100.0
2.	0.9	55.6	12.2	8.4	3.8	8.4	7.7	1.0	1.9	100.0
3.	1.1	51.2	10.2	6.8	3.8	16.7	7.6	0.7	1.8	100.0
4.	0.3	53.3	9.1	7.8	4.4	13.5	8.7	1.2	1.8	100.0
5.	0.6	53.7	9.5	7.9	4.7	11.0	8.7	1.2	2.7	100.0
6.	0.9	53.6	10.0	8.6	4.0	9.4	10.4	0.9	2.1	100.0
7.	0.6	50.3	10.9	8.7	4.8	9.3	11.3	2.0	2.0	100.0
8.	0.8	51.9	10.8	8.5	3.4	8.8	11.7	2.3	1.8	100.0
9.	0.9	51.7	11.9	10.6	3.9	5.7	12.0	1.5	1.7	100.0
10.	0.9	48.8	10.9	9.1	3.2	11.0	12.7	1.7	1.7	100.0
11.	0.5	40.4	9.5	7.3	3.6	23.4	12.0	1.3	2.1	100.0
12.	0.5	39.1	12.0	8.0	4.5	18.3	13.2	2.3	2.0	100.0
전체	0.8	51.4	10.4	8.1	4.0	11.7	10.2	1.4	1.9	100.0

### 제 3장 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이동과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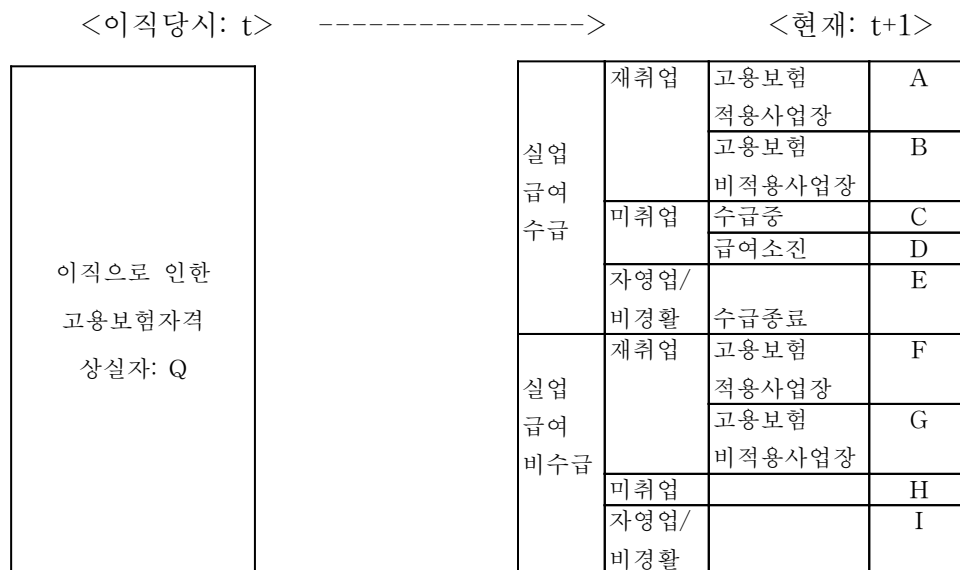
제 1절 고용보험 피보험이직자에 대한 추적조사(Follow-Up Survey)의 필요성 및 조사개요

#### 1. 추적조사(Follow-Up Survey)의 필요성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들의 노동시장이동과정에 관한 분석은 고용보험 특히 실업급여의 효과분석에 관련된 주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피보험 근로자들은 직장을 이직한 후 얼마동안의 실업기간(+비경활기간)을 거쳐 재취직을 하는가? 이직자 중 몇 %가 재취업대신 자영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가?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의 이동경로 및 실업기간은 어떻게 서로 다른가? 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몇 %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재취업해 들어오는가? 등은 실업급여 수급내용에 관한 분석 못지않게 고용보험의 제도평가 및 정책수립에 요긴한 정보이다.

이직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파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들의 노동시장이동경로는 아래 도표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직자들의 현재의 경제활동 및 취업상태를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취업-미취업 등 노동시장 이동경로에 따라 구분해 보면 아래 도표에서 보여주는 대로 A그룹에서 I그룹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림 3-1>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노동시장 이동경로 모형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DB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별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은 이직자 및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고용보험DB에서 관리되고 있는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관한 자료체계를 보여준다.

<표 3-1>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DB 상의 이직자 및 수급자들의 직장 및 개인관련 정보

(a) 이직전 피보험자 개인에 관한 정보	연령, 성, 학력 등
(b) 이직전 사업장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산업, 규모, 지역, 자본금, 채용일, 직종, 월급여, 근속기간, 취득사유 등
(c) 이직후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관한 정보	없음
(d) 재취업 사업장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취업이 될 경우)	산업, 규모, 지역, 자본금, 채용일, 직종, 월급여, 취득사유 등
(e) 실업급여 수급내역에 관한 정보	수급자격 신청일, 최초실업인정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 기본급여연장일수, 실업인정일수누계, 수급기간, 기본급여수령계, 각종 수당수령내역, 재취업구분 등

첫째, 실업급여 비수급자들의 경우 이직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하여 피보험자로 다시 등록이 될 때까지 이직 이후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c)가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고, 더욱이 이직 이후 자영업이나 비경활인구로 빠지는 이직자들에 관한 정보는 이직 이전의 사업장이나 개인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모르게 된다(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경우는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수급기간은 실업-구직기간으로 봄).

둘째,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경우는 수급상의 지위가 노동시장 이동과정과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은 취업, 미취업, 자영업, 비경활동으로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경우도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급자집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파악이 안되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들의 노동시장이동에 관한 정보도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셋째, 수급자들이 수급종료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해 들어올 경우 그들의 재취업에 관한 정보가 고용보험DB에 등록이 되지만 수급종료일-재취업일의 중간 기간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수급자들

이 수급을 종료한 후 자영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경우, 혹은 비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도 수급이후의 노동시장이동에 관한 정보는 완전누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보험DB 정보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료를 이용하여 이직자 및 수급자들의 재취업 등 노동시장이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직이후의 이동경로, 실업기간 등 필수적인 통계자료가 완전추정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직자 및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직자 및 수급자표본에 대한 추적(Follow-Up) 서베이를 통한 보충적 자료가 필요하다. Follow-Up 서베이는 동일 시점의 이직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구하고 이직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직시점과 서베이시점간 개별 이직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집된 서베이자료를 고용보험DB와 실업급여수급자DB로부터 가져 온 개별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및 이직 사업장에 관한 정보와 ID를 이용하여 병합(merge)하면 노동시장 이동과정의 분석이 가능한 완벽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DB와 실업급여수급자DB로부터 조사대상자를 표본추출하고 그들에 대한 Follow-UP 서베이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이동과정을 분석하였다.

## 2.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되는 Follow-Up Survey의 조사대상은 주로 1997년 10월-12월 사이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약 36만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업급여수급자(약 28,000명) 중에서 1,500명과 비수급자(약 33만명) 중에서 1,500명을 각각 유의할당하고 각 모집단에서 아래와 같이 체계적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표 3-2> 실태조사 표본추출방법

	실업급여 비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모집단수	약 36만명	약 2.8만명
신뢰구간	95%	95%
표본수	1,500명	1,500명
표집오차	±2.2%	±2.9%

### 2) 조사시기: 1998년 10월

### 3) 조사방법: CATI(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면접

#### 4) 조사내용: <부록 1> 참조

#### 5) 이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아래의 <표 3-3>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특성을 살펴 본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3,027명 중 1,534명으로 약 50.6%를 차지하며, 비수급자는 1,493명으로 전체의 약 49.4%를 차지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는 남성이 약 7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약 62%를 차지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연령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수급자들 가운데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비수급자들 중에서는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는 수급자들 중에서는 약 14%를 차지하였고, 비수급자들 중에서는 약 5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비율은 전직장의 근속년수 비율과 바로 연관되는데,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보다 전직장의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자들의 경우 10-15년 미만 근속자가 13.7%, 15-20년 미만 근속자가 10.7%, 20년 미만 근속자가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수급자들은 각각 2.5%, 1.5%,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으로 수급자들의 전직장의 근속년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9%, 6개월-1년 미만인 경우가 3.0%인데 반해 비수급자들은 각각 28.7%,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수급자들의 경우 수급자들에 비해 근속년수가 상당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비수급자들의 경우 고졸이 약 6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초졸과 중졸의 저학력층의 비율과,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하던 기업의 규모에 있어서는 수급자들 가운데 대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수급자들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한 비율이 약 44%임에 반해, 비수급자들은 약 26%에 그치고 있다.

이직전 직종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급자들의 경우 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율이 높고, 비수급자들의 경우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율에 있어 수급자들의 경우 약 10%임에 비해 비수급자들은

약 2%를 차지하며, 단순노무직의 비율에 있어서 수급자들의 경우 약 18%임에 비해 비수급자들의 경우 약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대기업의 정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결과로써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 및 근속년수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대기업의 정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남성중심의 대기업 장기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3>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들의 일반적 특성(단위: %)

구분		고용보험 이직자(%) n=3,027	실업급여 수급자(%) n=1,534	실업급여 비수급자(%) n=1,493
성별	남자	62.2	73.2	61.5
	여자	37.8	26.8	38.5
연령	30세 미만	47.9	14.0	49.9
	30-39세	26.3	23.5	26.6
	40-49세	15.5	32.9	14.5
	50세 이상	10.3	29.5	9.0
학력	초졸	6.0	13.6	6.0
	중졸	15.9	23.5	17.8
	고졸	60.8	41.0	62.8
	전문대졸	8.0	6.6	6.4
	대졸	8.9	14.4	6.7
	대학원 이상	0.4	0.8	0.1
전직장의 근속년수	6개월 미만	26.7	1.9	28.7
	6개월 -1년 미만	14.5	3.0	15.5
	1-2년미만	16.7	11.2	17.1
	2-5년미만	23.1	23.3	22.8
	5-10년미만	11.3	22.4	10.5
	10-15년미만	3.3	13.7	2.5
	15-20년미만	2.3	10.7	1.5
	20년 이상	2.3	13.7	1.4
전직장의 기업규모	30인 미만	5.7	4.8	5.8
	30인 이상-100인 미만	38.4	29.9	39.0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8.6	21.8	29.1
	300인 이상-500인 미만	9.4	6.8	9.5
	500인 이상-1,000인 미만	5.1	8.7	4.8
	1,000인 이상	12.8	28.0	11.9
이직전 직종	임직원, 관리자	2.3	10.1	1.6
	전문가	2.1	2.9	1.6
	기술자 및 준전문가	5.8	5.1	5.7
	사무직	21.9	23.7	22.0
	서비스근로자등	6.8	3.5	5.5
	농업, 어업	0.2	0.2	0.3
	기능원	27.9	30.9	27.2
	조립원	10.0	5.2	10.7
	단순노무직	22.9	18.3	25.4

제 2절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들의 재취업 실태분석<sup>10)</sup>

10)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 3,027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1,534명,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1,493명이다. 이하의 분석결과중 실업



## 1.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재취업 실태

이직자들의 재취업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전 직장을 이직한 후 지금까지<sup>11)</sup>(현재 시점은 '98년 10월 1일 기준) 일주일 이상 재취업(자영업, 아르바이트, 무급가족종사 포함)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이직자 3,027명중 약 50%가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약 50%는 재취업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당시 현재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취업중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리하여 각각의 재취업내용에 관하여 물어 보았다. 재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중간에 다시 이직 혹은 실직을 하여 현재 미취업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취업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직 이후 재취업 경험유무와 현재의 취업여부의 조합에 따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하나의 조합을 제외하면 전체 이직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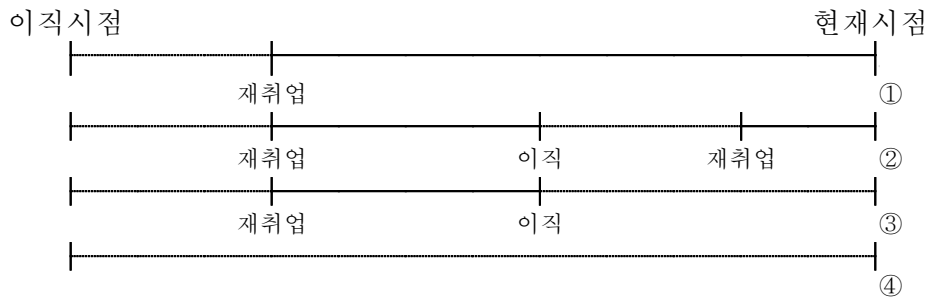
- (1) 지금까지 재취업경험이 있고 현재도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 (2) 지금까지 재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 (3) 지금까지 재취업경험이 없고 현재도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1)의 그룹은 다시 ①이직후 처음으로 재취업한 직장에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우와 ②이직후 재취업을 한 후, 그 직장에서 다시 이직하여 다른 직장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의 그룹은 ③이직후 재취업을 했으나, 그 직장에서 다시 이직하여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이며, (3)의 그룹은 ④이직후 재취업경험도 없고 현재도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러한 구분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3-2>과 같다.

---

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별하여 분석한 것은 가중치를 주지 않고 분석한 결과이며,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로 가중치를 주어 분석한 것이다.

11) 이직시점('97.7-12) - 현재('98.9)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그림 3-2> 고용보험 이직자의 이직후 재취업경험

<표3-4>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중 약 50%가 지난 1년간 재취업경험이 있고, 나머지 50%는 재취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취업 경험이 있는 50%중 약 2/3인 33.7%는 현재도 재취업상태에 있으며, 약 1/3인 16.6%는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경험의 유무와 현재의 재취업상태를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과 비수급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수급자의 경우 약 38%가 지금까지 한번 이상 재취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는 약 51%가 그러하여 재취업경험율에 있어서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에 비해 약 13% 정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21.5%만이 현재까지 재취업상태에 있는데 비해, 비수급자의 경우 34.4%가 현재까지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취업율에 있어서도 약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4> 고용보험 이직자의 재취업 경험유무 및 현재의 취업유무(단위: %)

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재취업경험 있고, 현재 재취업	21.5	34.4	33.7
재취업경험있으나 현재 미취업	16.2	16.6	16.6
재취업경험 없고, 현재 미취업	62.3	49.0	49.7
합계	100.0	100.0	100.0

현재까지의 재취업 경험율은 이직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비수급자간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이직시점을 '97년 10월로 통제하고 분석해 보았다. <표3-5>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재취업 경험비율이 수급자들의 경우 약 35.7%(19.5+16.2), 비수급자들의 경우 51.8%(35.1+16.7)로 나타나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19.5%만이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반면 비수급자들의 경우는 35.1%가 현재 취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취업율에 있어

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15%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약 64.3%, 비수급자들의 약 48.1%가 1년 이상('97.10-'98.10) 재취업경력없이 계속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5>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재취업경력('97년 10월 이직자 기준)(단위: %)

내용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재취업경험 있고, 현재 취업	19.5	35.1	34.8
재취업경험있으나, 현재 미취업	16.2	16.7	16.7
재취업경험 없고, 현재 미취업	64.3	48.1	48.5
합계	100.0	100.0	100.0

<표3-6>은 재취업경험과 현재의 취업여부 분포를 이직시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례수가 얼마 되지 않는 7월, 8월 이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직시점에 따른 재취업경력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3-6> 이직시점에 따른 재취업경력 (단위: %)

내용	이직시점구분						합계
	'97. 7월	'97. 8월	'97. 9월	'97. 10월	'97. 11월	'97. 12월	
재취업경험있고 현재 취업	31.0	32.5	36.1	34.8	29.9	34.7	33.6
재취업경험있으나 현재 미취업	13.8	14.6	17.2	16.7	18.1	12.4	16.6
재취업경험없고 현재 미취업	55.2	52.8	46.7	48.5	52.0	52.9	4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 고용보험 이직자들의 적용사업장 재취업비율

전체 이직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과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것이고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과 비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들의 몇 %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해서 돌아오는가? 고용보험 사업장을 이직하여 다시 적용사업장으로 재취업해 들어오는 비율을 '재진입률'로 정의하고 조사자

료를 이용하여 추정해 본다.

<표 3-7> 고용보험 사업장으로의 재진입률(전체 이직자 대상)

이직자	재취업경험	현재 취업상태	고용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사업장 전체 이직자 (n=3,027)	경험유 (50.3%, n=1,521) (전체대비 50.3%)	임금근로자 (52.2%, n=794) (전체대비 26.2%)	적용사업장 (63.8%, n=507) (전체대비 16.7%)
			비적용사업장 (36.2%, n=287)
		자영업 (11.6%)(n=176)	비적용
		무급가족종사 (3.2%)(n=49)	
	미취업 (33.0%)(n=502)		
경험무 (49.8%) (n=1,506)	미취업 (49.7%) (n=1,506)	미취업 (49.7%) (n=1,506)	

분석결과 고용보험 사업장 이직자들의 약 50%가 이직후 1년여의 기간동안 재취업을 경험하게 된다. 1년 후의 시점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비율은 약 52.2%, 전체 이직자의 약 26.2% 정도이며, 이 중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비율, 즉 ‘재진입률’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의 약 63.8%이나 전체 이직자 대비로는 약 16.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어 분석본 것이 <표 3-8>와 <표 3-9>이다. 수급자들의 경우 재취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중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경우가 45.7%, 이 중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재진입하는 근로자는 현재 임금근로자대비 58.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용보험 사업장으로의 재진입률은 전체 수급 이직자의 10.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중 현재 임금근로자로 취업해 있는 비율은 52.4%이며, 이 중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임금근로자대비 약

64%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업장으로서의 재진입율은 전체 비수급 이직자의 17.1%이다. 결과적으로, 비수급자가 수급자보다 고용보험사업장으로서 재진입하는 비율이 약 7%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수급자들의 경우 고용형태상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비수급자들보다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표 3-8> 고용보험 사업장으로서의 재진입율(수급 이직자 대상)

수급이직자	재취업경험	현재 취업상태	고용보험 적용여부
수급 이직자 (n=1,534)	경험유 (37.7%, n=578) (전체대비 37.7%)	임금근로자 (45.7%, n=264) (전체대비 26.2%)	적용사업장 (58.7%, n=155) (전체대비 10.1%)
			비적용사업장 41.3%, n=109)
		자영업 (9.5%)(n=55)	비적용
		무급가족종사 (1.9%)(n=11)	
	미취업 (42.9%)(n=248)		
경험무 (62.3%, n=956)	미취업 (62.3%) (n=956)	미취업 (62.3%) (n=956)	

<표 3-9> 고용보험 사업장으로서의 재진입율(비수급 이직자 대상)

비수급 이직자	재취업경험	현재 취업상태	고용보험 적용여부
비수급 이직자 (n=1,493)	경험유 (51.0%, n=761) (전체대비 51.0%)	임금근로자 (52.4%, n=399) (전체대비 26.7%)	적용사업장 (63.9%, n=255) (전체대비 17.1%)
		자영업 (11.7%)(n=89)	비적용
		무급가족종사 (3.3%)(n=25)	
		미취업 (32.6%)(n=248)	
	경험무 (49.0%, n=732)	미취업 (49.0%) (n=732)	미취업 (49.0%) (n=732)

### 3. 재취업 경험자들의 계속 취업여부

전체 재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현재까지 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2.5%이며 나머지 37.5%는 중간에 그 일자리를 그만 두었고 그만 둔 사람들 중 12.7% 만이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여부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들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59.0%(재취업경험), 41.0%(현재 취업중)인 반면 비수급자들의 경우는 각각 62.6%, 37.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재취업 경험자들의 계속 취업여부 분포(단위: %)

계속 취업여부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예	59.0	62.6	62.5
아니오	41.0	37.4	37.5 (이중 12.7%는 현재 취업)
합계	100.0	100.0	100.0

### 4. 이직자중 실망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현재 미취업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망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추정해 보았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계적 정의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는데, 이들 가운데 ‘알맞는 일거리나 직장이 생길 경우 취업할 의향이 있는’ 사

람들은 실망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그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망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별해보았다. 실망실업자의 비율 추정을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지난 1개월동안의 구직활동경험과 구직포기여부를 물어보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맞은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다시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3-11>와 같다.

<표 3-11> 현재 미취업자들 중 실망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n=2,008)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경험	구직포기여부	일자리가 주어질 경우 취업의향여부
있다(a)(42.7%, n=858)		
없다(b) (57.3%, n=1,150)	그렇다(c)(36.9%, n=424)	그렇다(e)(82%, n=217)
	그렇지않다(d)(63.1%,n=726)	그렇지 않다(f)(18%, n=207)

<표 3-11>를 보면, 현재 미취업자중 지난 1개월동안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이며,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7.3%를 차지하였다.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중 구직활동을 하 포기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로서 이들은 통계적 정의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알맞는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다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 중 실망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현재 미취업자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비율(a)은 42.7%이며, 구직활동을 포기하였으나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취업할 의향이 있는 실망실업자의 비율(d+e)은 약 57%,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f)은 약 10.3%인 것으로 추정된다.

### 제 3절 고용보험 이직자 및 실업급여수급자의 재취업 과정

#### 1. 재취업경험자들의 재취업형태분포

이직후 재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형태 및 내용의 재취업을 하는가? <표 3-13>는 재취업 경험자들의 재취업형태를 보여준다. 재취업 경험자들의 약

82.5%는 임금근로자로, 17.5%는 자영업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간의 재취업형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급자의 경우 자영업의 취업비율이 약 16%로 수급자의 13.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3> 재취업 경험자들의 재취업형태 (단위: %)

재취업형태 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임금근로	85.3	82.4	82.5
자영업	13.2	16.0	15.9
무급가족종사	1.5	1.6	1.6
합계	100.0	100.0	100.0

## 2. 재취업까지의 소요기간

<표 3-14>는 이직후 재취업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8일, 약 3.6개월로 추정되었다. 수급여부별로 구분해 보면, 수급자들의 경우 재취업까지 평균 152일, 약 5개월이 소요되며 비수급자의 경우 평균 105일, 약 3.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50일정도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14> 재취업경험자들의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단위: 일)

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평균 소요기간	152	105	108

<표3-15>은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범주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것이다. 전체 재취업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직후 1개월 이내에서 조사시점까지의 최대 관찰기간인 1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를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수급자들은 앞에서 보고된 대로 약 38%가 조사시점 현재까지 재취업경험이 있는데,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5.8%의 비율을 차지하며, 1-3개월 이내가 25.8%, 3-6개월 이내가 30.7%, 6개월-1년 정도가 37.7%를 차지해 이직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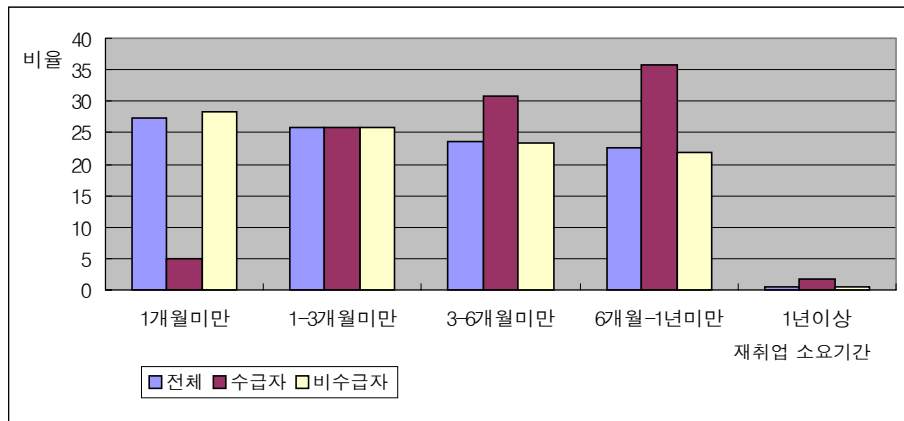


었다.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약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자들은 약 51%가 재취업경험이 있는데, 1개월 이내 재취업자가 약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3개월 미만이 약 27%, 3-6개월이 약 23%, 6개월-1년 미만이 약 22%로 나타나 이직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약 7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수급자들은 수급자들보다 이직 후 재취업률이 높고(<표 3-8>, <표 3-9> 참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취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낮은 것은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이 조사대상자들의 이직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1년 후의 재취업경과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15> 재취업경험자들의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단위: %)

기간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1개월 미만	5.8	28.4	27.3
1-3개월 미만	25.8	25.9	25.8
3-6개월 미만	30.7	23.3	23.7
6개월-1년 미만	35.9	21.8	22.6
1년 이상	1.8	0.5	0.6
합계	100.0	100.0	100.0



<그림 3-1> 재취업경험자들의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분포(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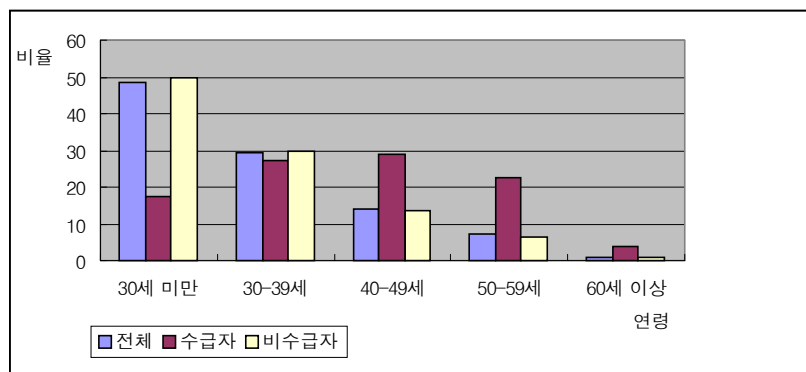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는 재취업률, 재취업형태,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두 그룹간 구직행위 및 재취업률에 있어서의 구조적인(structural) 차이인지

아니면 구성상의(compositional) 차이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직사유에 있어서 전자는 비자발적 이직이고, 후자의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것, 그리고 연령분포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 등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이직사유와 연령이 이직 이후의 구직행위나 재취업가능성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재취업률에 있어서의 관측된 차이는 일정부분 구성상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3-16>는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의 연령분포를 보여주는데, 비수급자들이 수급자들에 비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자들은 40-49세 연령층의 비율이 2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50-59세 연령층의 비율도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령층 비율도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55.2%에 해당하였다. 비수급자들은 30세 미만 연령층의 비율이 49.7%로 비수급자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며, 30-39세 연령층의 비율은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비율은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3-2>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3-16>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연령분포(단위: %)

수급여부	연령구분					합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수급자	17.5	27.3	28.9	22.5	3.8	100.0
비수급자	49.7	29.6	13.5	6.4	0.8	100.0
합계	48.4	29.3	14.1	7.2	0.9	100.0



<그림 3-2>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연령분포

그렇다면,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재취업률 및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3-17>과 <표 3-18>은 이직자의 연령이 30-49세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율과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분석해 본 것이다. <표 3-17>의 수급여부에 따른 재취업율을 살펴 보면, 수급자의 재취업율은 37.5%, 비수급자의 재취업율은 53.5%로써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전체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37.7% : 5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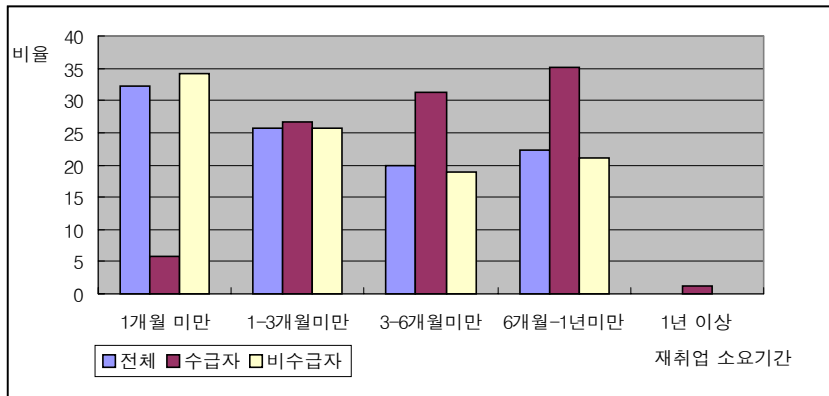
<표 3-17>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재취업 경험유무(30-40대 기준)(단위: %)

재취업 경험유무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있다	37.5	53.5	52.2
없다	62.5	46.5	47.8
전체	100.0	100.0	100.0

한편, <표 3-18>의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비교해 보면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단기간내 재취업하는 비율의 차이가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전체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수급자 5.7%, 비수급자 34.2%로, 전체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수급자 대비 비수급자의 비율 5.8% : 28.4%보다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는 실직기간동안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 비수급자들이 더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급자는 전체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3-18>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30-40대 대상)(단위: %)

기간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1개월 미만	5.7	34.2	32.3
1-3개월 미만	26.6	25.7	25.7
3-6개월 미만	31.3	19.0	19.8
6개월-1년 미만	35.1	21.1	22.2
1년 이상	1.3	-	-
합계	100.0	100.0	100.0



<그림 3-3>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30-40대 대상)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이 보이는 재취업 행태에 있어서의 차이가 단순히 그룹간의 구성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결론지을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의 재취업 행태의 차이는 두 그룹간의 구조적인 차이와 기타 상호작용적인 변수들의 복합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주시시켜 준다.

### 3. 재취업시의 소득수준

<표 3-19>은 재취업자의 이직전 소득수준과 재취업시의 소득수준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직자들의 이직전 평균소득은 약 111만원으로 추정되며, 재취업시 평균소득은 약 99만원으로 추정되어 재취업시 소득은 이직전 소득에 비해 약 12만원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직전 평균소득과 재취업시 평균소득을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즉, 수급자의 경우 이직전 평균소득은 약 164만원이었음에 비해 재취업시 평균소득은 약 90만원으로 70만원 이상의 감소를 보인 반면, 비수급자들의 경우 재취업시 평균소득은 약 100만원으로 이직전 평균소득 약 107만원에 비해 단지 7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이직전 평균소득은 훨씬 높지만 재취업으로 인한 평균소득은 다소 낮으며, 따라서 재취업으로 인한 평균소득의 감소폭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9> 재취업 경험자들의 평균소득의 비교(단위: 천원)

12) 참고로 1997년 10인 이상 사업장(비농가)의 임금총액은 평균 약 14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직전			재취업시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평균소득	1,641	1,068	1,109	903	996	993

이직전 종사 사업장에서의 임금분포를 임금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3-20>과 같다. 우선 수급자의 경우, 100-150만원 미만이 약 31%이며, 150-200만원 미만이 약 26%, 200-500만원 미만이 약 25%로 비수급자들에 비해 이직전 조사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취업시 임금수준은 50-100만원 미만이 약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0-150만원 미만이 약 25%를 차지함으로써 재취업으로 인한 임금수준은 이직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비수급자의 경우는 재취업시 임금수준이 이직전 임금수준에 비해 다소 낮아지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0> 재취업 경험자들의 이직전-재취업시 임금수준 비교(단위; %)

범 주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이직전	재취업시	이직전	재취업시	이직전	재취업시
50만원 미만	0.7	9.6	12.9	12.9	12.0	12.8
50-100만원 미만	16.9	52.9	38.0	43.2	36.6	43.5
100-150만원 미만	30.8	24.4	31.2	25.6	31.3	25.7
150-200만원 미만	25.8	6.9	7.3	11.1	8.6	11.0
200-500만원 미만	25.3	6.2	9.6	6.7	10.6	6.6
500만원 이상	0.4	-	0.9	0.4	0.9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4. 재취업 사업장 분석

##### (1) 임금근로자의 경우

###### ① 고용형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재취업중인 근로자의 약 82.5%는 임금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고용 안정성(계속 근로유무 등) 및 근로조건(임금 및 각종 보상체계)은 달라지게 된다. 즉 정규직 및 상용직으로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계약직 및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형태보다 고용안정성이 높고 근로조건도 좋은 것이다. 이에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보았다. <표 3-21>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69.2%가 정규-상용직으로 재취업하며, 17.3%는 계약-임시직, 12.3%는 일용직의 형태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급자의 경우 정규-상용직의 형태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51.7%, 계약-임시직이 29.3%, 일용직이 17.9%이며, 비수급자의 경우 정규-상용직이 69.7%, 계약-임시직이 16.9%, 일용직이 12.1%였다. 즉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정규-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낮고, 계약-임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21>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취업형태(단위: %)

취업형태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정규-상용직	51.7	69.7	69.2
계약-임시직	29.3	16.9	17.3
일용직	17.9	12.1	12.3
기타	1.2	1.3	0.2
전체	100.0	100.0	100.0

이처럼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계약-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성하는 연령분포상의 차이와 이직사유상의 차이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비수급자들의 경우 연령층이 낮고 전직, 자영업등을 이유로 임의퇴직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취업하게 될 경우 수급자들에 비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표 3-22>과 <표 3-23>이 이러한 가정을 분석해 본 것이다. 아래의 <표 3-22>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연령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는 30세 미만이 18.1%를 차지하는 반면, 50세 이상인 경우는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상반되게 비수급자는 30세 미만이 52.8%로서 절반이상에 해당하며, 50세 이상인 경우는 약 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수급여부별 연령분포(단위: %)

연령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30세 미만	18.1	52.8	51.5
30-39세	25.5	27.4	27.3
40-49세	26.4	12.0	12.5
50-59세	25.5	6.9	7.7
60세 이상	4.5	1.0	1.0
전체	100.0	100.0	100.0

또한 <표 3-23>의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근로자들의 이전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비수급자는 임의퇴직, 즉 자발적 퇴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직·자영업 등을 위한 임의퇴직이 35.1%, 학업·군복무 등을 위한 임의퇴직이 18.3% 등 임의퇴직이 전체 이직사유의 62.8%를 차지하는데 비해, 수급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에 의한 이직이 47.9%, 정리해고인 경우가 26.8%로 이직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년퇴직의 경우도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급여수급자격요건상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6%가 자발적 이직자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고용보험DB상의 이직사유와 본인이 생각한 이직사유, 즉 설문조사상의 이직사유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표 3-23>은 설문조사상의 이직사유를 분석한 것이다.

<표 3-23>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근로자들의 이전직장 이직사유 분포(단위: %)

이직사유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직·자영업등을 위한 임의퇴직	5.8	35.1	33.8
결혼/출산/육아등-임의퇴직	0.2	2.4	2.2
질병부상 등-임의퇴직	1.6	7.0	6.8
징계해고	0.2	0.6	0.6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경	6.0	8.6	8.5
학업, 군복무등-임의퇴직	0.7	18.3	17.5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3.4	0.5	0.6
사업장 폐업, 도산	47.9	11.3	12.8
정리해고	26.8	8.6	9.5
정년퇴직	5.1	1.1	1.3
계약기간만료	2.0	0.8	0.9
기타	0.2	5.6	5.4
전체	100.0	100.0	100.0

②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표 3-24>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전체 재취업 임금근로자의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9일, 약 3.6개월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의 <표 3-14>에서 재취업 경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급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수급자의 경우 평균 154일, 약 5.1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평균 107일, 약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4>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평균, 단위: 일)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평균	154	107	109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치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 3-25>과 같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재취업 소요기간은 이직후 1개월 이내에서 최대 관찰기간인 1년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의 <표 3-15>의 전체 재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을 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큰 차이가 발견된다. 즉 비수급자들은 이직후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28.4%로 가장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수급자들은 이직후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한 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분포(단위: %)

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1개월 미만	5.3	28.4	27.4
1-3개월 미만	25.8	24.7	24.7
3-6개월 미만	30.9	23.7	24.1
6개월-1년 미만	35.8	22.5	23.3
1년 이상	2.1	0.6	0.7
합계	100.0	100.0	100.0



### ③ 구직방법

그렇다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은 어떠한 구직경로를 통해 재취업하게 되는가? 아래의 <표 3-26>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구직방법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경우 친구/친지의 소개로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가 약 3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고를 통해서 재취업한 경우가 20.1%를 차지하였으며, 전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한 재취업이 약 18%를 차지하였다. 공공직업소개를 통한 재취업한 경우는 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노동사무소, 인력은행, 직업안정센터 등 공공구직기관을 통한 재취업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재취업자의 절반이상인 약 54%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표 3-26>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구직방법(단위: %)

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광고를 통해	15.6	20.5	20.1
전직장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18.6	18.2	18.2
친구/친지의 소개로	38.0	36.1	36.2
공공직업소개를 통해	18.3	5.6	6.1
직접방문(전화)	3.4	5.3	5.3
전 직장에서 다시 다니라고 함	1.9	4.0	4.0
타회사 제의	0.4	2.0	2.0
기타	3.8	8.3	8.1
합계	100.0	100.0	100.0

위의 분석결과를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의 <표 3-26>에 따르면,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 모두 친구/친지의 소개로 인한 재취업이 각각 38.0%, 3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공공직업소개를 통한 재취업한 확률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다른 구직방법들은 수급여부별 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공공직업소개를 통한 구직확률은 수급자의 경우 18.3%, 비수급자의 경우 5.6%로써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용보험 제도상의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구직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공공구직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확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한 재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의 <표 3-27>는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공공구직

기관의 등록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급자들의 경우 공공구직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9%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급자본인이 실업급여 지급절차상의 구직등록여부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경우 100% 공공구직기관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표 3-27> 실업급여 수급여부별 공공구직기관 구직등록여부(단위: %)

공공구직기관 구직등록여부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그렇다	52.1	16.1	17.6
그렇지 않다	47.9	83.9	82.4
합계	100.0	100.0	100.0

#### ④ 이직전·재취업시 임금수준

아래의 <표 3-28>은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이직전 임금수준과 재취업시 임금수준을 추정한 것이다. 분석에 의하면, 재취업시 평균임금은 약 92만원으로 이직전 평균임금 약 108만원에 비해 약 16만원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감소폭은 훨씬 커서, 이직전 평균임금이 16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재취업시 약 89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비수급자의 경우 이직전 평균임금은 약 104만원, 재취업시 평균임금은 약 93만원으로 약 1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에 비해 평균임금의 감소폭이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8>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이직전·재취업시 평균임금비교(단위: 천원)

임금	이직전			재취업시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평균	1,617	1,042	1,083	888	925	923

아래의 <표 3-29>은 위의 <표 3-28>에서 나타난 이직전·재취업시 평균임금을 임금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살펴본 것이다. 수급자들의 경우 이직전 평균임금분포를 살펴보면, 100-150만원 미만이 32.4%를 차지하며, 150-200만원 미만이 25.1%, 200-500만원미만이 23.4%로 이직전 임금수준이 약 100~500만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재취업시 평균임금은 50-100만원 미만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100-150만원 미만은 26.1%, 150만원 이상의 평균임금을 가지는 비율은 단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카테고리로 분석해 볼 경우, 5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이직전 12.5%에서 재취업시 10.6%로 감소하였으며, 150-200만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비율은 7.7%에서 10.6%로 다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이직전·재취업시 평균임금분포(단위: 천원)

구분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이직시	재취업시	이직시	재취업시	이직시	재취업시
50만원 미만	0.5	6.1	12.5	10.6	11.5	10.4
50-100만원 미만	18.2	57.6	40.8	48.1	39.3	48.4
100-150만원 미만	32.4	26.1	30.4	26.4	30.6	26.5
150-200만원 미만	25.1	6.9	7.7	10.6	8.9	10.5
200-500만원 미만	23.4	3.3	7.7	4.3	8.8	4.2
500만원 이상	0.5	-	0.9	-	0.9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⑤ 전직장 대비 근로조건 및 근무조건 변화

앞에서 살펴본 분석결과들은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실태를 분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계량화된 분석결과들과 아울러,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전직장에 비해 재취업 사업장의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해 보았다.

<표 3-30>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에게 전직장에 비해 급여수준은 어떠한지를 물어본 것이다. ‘전직장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8%를 차지하였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3.5%, ‘전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자의 절반정도는 재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준이 전직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를 수급여부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응답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수급자의 경우 ‘전보다 낮다’고 대답한 비율이 8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비슷하다’고 답한 경우가 15.2%, ‘전보다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자들의 경우 전직장에 비해 재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준의 감소폭이 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수급자의 경우 ‘전보다 낮다’고 대답한 경우가 52.8%를 차지하며, ‘비슷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34.1%를 차지하였다. ‘전보다 높다’고 대답한 비율도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자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급여수준의 감소폭이 수급자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3-30>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전직장 대비 급여수준(단위: %)

급여수준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보다 낮다	81.7	52.8	53.8
비슷하다	15.2	34.1	33.5
전보다 높다	3.0	13.1	12.7
합계	100.0	100.0	100.0

<표 3-31>는 재취업 사업장에서의 직위나 직급이 전직장에서의 직위나 직급에 비해 어떠한지를 물어본 것이다. 재취업으로 인한 직위 및 직급의 변화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으며, ‘전보다 낮다’고 대답한 비율이 29.2%, 전보다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급여수준의 변화(‘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3.5%, <표 3-30> 참고)에 비해 전직장에 대비한 직위나 직급의 변화(‘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1.3%)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비교해 보면, 수급자는 재취업으로 인해 직위나 직급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56.7%를 차지하였으며, ‘비슷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9.5%, ‘전보다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비수급자는 ‘전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단지 약 28%를 차지하였으며, ‘비슷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63.3%, ‘전보다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비수급자들이 수급자들보다 전직장과 비슷한 직위나 직급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전직장 대비 직위/직급(단위: %)

직위/직급수준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보다 낮다	56.7	28.1	29.2
비슷하다	39.5	63.3	62.3
전보다 높다	3.8	8.6	8.5
합계	100.0	100.0	100.0

<표 3-32>은 재취업 사업장의 급여수준이나 직위 및 직급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근무조건에 대해서 전직장과 비교했을 경우 어떠한지를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해 전체 재취업자의 약 40%가 '전보다 안좋다'고 대답하였으며, 약 35%가 '비슷하다', 약 25%가 '전보다 좋다'고 대답하였다. 수급자는 '전보다 안좋다'고 대답한 경우가 72.2%를 차지하였으며, '비슷하다'가 20.5%, '전보다 좋다'가 7.2%로 대부분이 전직장에 비해 근무조건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수급자는 '전보다 안좋다'고 대답한 비율이 38.9%, '비슷하다'가 35.6%, '전보다 좋다'고 대답한 비율도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전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조건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3-32>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전직장 대비 일반적 근무조건(단위: %)

근무조건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보다 안좋다	72.2	38.9	40.0
비슷하다	20.5	35.6	35.1
전보다 좋다	7.2	25.5	24.9
합계	100.0	100.0	100.0

(2) 자영업자들의 경우

①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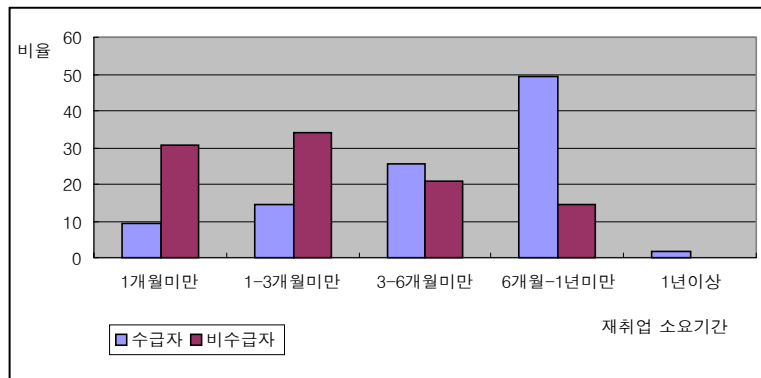
자영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되기 까지 걸리는 기간이 <표 3-33>에 나타나 있다.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0일, 약 3개월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보다 빠른 기간내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여부별로 살펴 보면, 수급자들은 평균 168일, 비수급자들은 평균 86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자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수급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으로 재취업하게 될 경우 소요기간이 더 긴 반면, 비수급자는 자영업보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소요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표 3-33>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평균, 단위: 일)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평균	168	86	90

<표 3-34>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분포(단위: %)

기간구분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1개월 미만	9.5	30.5	29.6
1-3개월 미만	14.3	34.1	33.4
3-6개월 미만	25.4	20.7	20.8
6개월-1년 미만	49.2	14.6	16.1
1년 이상	1.6	-	0.1
합계	100.0	100.0	100.0



<그림 3-4>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분포

<표 3-33>의 결과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위의 <표 3-34>에 제시된다. 수급자의 경우 자영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1년미만이 49.2%로 가장 많았고, 3-6개월이 25.4%, 1-3개월이 14.3%였으며 1개월 미만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수급자의 경우 이직후 1개월 이내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비율이 30.5%로 가장 많으며, 1-3개월 미만이 34.1%, 3-6개월 미만이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자영업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영업에 대한 준비 및 계획여부에 따른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영업으로 새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간의 이직 사유와 연관되는데, 아래의 <표 3-35>에서 보여지듯이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한 임의퇴직이 수급자의 경우 약 16.7%인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약 55.1%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35>는 설문조사상의 이직사유를 분석한 것이다.

<표 3-35>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근로자들의 이전직장 이직사유 분포(단위: %)

이직사유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직·자영업등을 위한 임의퇴직	16.7	55.1	54.2
결혼/출산/육아등-임의퇴직	-	1.7	1.7
질병부상 등-임의퇴직	-	4.7	4.6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 변경	-	2.6	2.5
학업, 군복무등-임의퇴직	-	12.8	12.5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	1.7	1.7
사업장 폐업, 도산	33.3	7.3	7.9
정리해고	50.0	6.8	7.9
계약기간만료	-	0.9	0.8
기타	-	6.4	6.3
전체	100.0	100.0	100.0

## ② 이직전-재취업시 소득수준 비교

아래의 <표 3-36>는 자영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과 이직전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재취업으로 인한 평균소득이 이직전 평균소득보다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소득수준의 증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급자는 자영업으로 인한 평균소득이 이직전 평균소득의 절반이하로 감소한 반면, 비수급자는 자영업으로 인한 평균소득이 이직전 평균소득보다 약간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을 기간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3-37>와 같다.

<표 3-36>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이직전·재취업시 평균소득비교(단위: 천원)

소득수준	이직전			재취업시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전체
평균	1,969	1,194	1,226	984	1,325	1,318

<표 3-37>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재취업시 소득수준분포(단위: %)

소득수준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50만원 미만	28.3	23.8	23.9
50-150만원 미만	28.3	21.3	21.3
100-150만원 미만	15.2	21.1	21.1
150-200만원 미만	6.5	13.5	13.5
200-500만원 미만	21.7	17.7	17.7
500만원 이상	-	2.5	2.5
합계	100.0	100.0	100.0

### ③ 전직장 대비 소득수준

아래의 <표 3-38>은 자영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이전 직장과의 소득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자들의 경우, 재취업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감소가 '상당히 적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33.2%, '조금 적다'고 대답한 비율은 14.6%로, 임금근로자가 '전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53.8%)과 비교해 볼 때 소득수준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금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 '상당히 많다'고 대답한 비율은 10.6%로써, 재취업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이전직장보다 증가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약 28.3%로써 임금근로자의 12.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수급자가 수급자에 비해 재취업시의 소득이 이전직장보다 많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약 29%로써, 수급자의 약 8%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38>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전직장 대비 소득(단위: %)

소득수준	수급여부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상당히 적다	62.7	32.5	33.2
조금 적다	13.7	14.5	14.6
비슷하다	15.7	24.1	24.0
조금 많다	5.9	18.1	17.7
상당히 많다	2.0	10.8	10.6
합계	100.0	100.0	100.0

### 제 4절 고용보험 이직자중 현재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



## 1. 현재 미취업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표본에 의하면, 이직후 1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여전히 미취업상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이직자 3,027명 중 2,008명으로 약 66%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직자의 어떠한 특성이 재취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3-39>은 미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재취업자와 비교분석한 것이다.

미취업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은 약 55%로서 재취업자의 약 76%보다 낮고, 여성의 비율은 44.8%로 재취업자의 23.9%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취업자와 미취업자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저연령층의 경우 미취업자가 약 50%임에 비해 재취업자는 42.9%이며,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미취업자가 11.5%이고 재취업자는 8.7%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30대의 경우 재취업자가 32.2%로 미취업자의 23.4%보다 그 비율이 높고, 40대의 경우도 재취업자가 16.2%로 미취업자의 15.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취업자는 재취업자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30대 미만의 저연령층과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미취업자는 고졸이 63%로 재취업자의 56.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졸과 중졸의 비율은 각각 6.5%, 16.7%로 재취업자의 5%, 14.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비율은 13.7%로써 재취업자의 24.3%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취업자가 재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전직장에서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경우, 근속년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가 26.7%로 재취업자의 24.2%보다 약간 높으며, 1-2년미만인 경우는 14.5%로 재취업자의 16.2%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근속년수가 1년-5년 사이인 비율은 39.8%로 재취업자의 43.8%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미취업자가 19.2%로 재취업자의 1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미취업자에 있어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비율이 재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속년수 또한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의 경우와 5년 이상의 장기근속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직전 직종에 있어서는 임직원·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사무직의 비율이 각각 2.1%, 1.6%, 5.5%, 21.9%로 재취업자의 각각 2.8%, 3.1%, 6.6%, 22%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기능원 혹은 단순노무직은 28.3%, 24%로 재취업자의 227.3%, 220.6%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9> 재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일반적 특성비교(단위: %)

구분		전체 이직자(%) n=3,027	재취업자(%) n=1,019	미취업자(%) n=2,008
성별	남자	62.2	76.1	55.2
	여자	37.8	23.9	44.8
연령	29세 미만	47.9	42.9	50.3
	30-39세	26.4	32.2	23.4
	40-49세	15.5	16.2	15.1
	50세 이상	10.3	8.7	11.1
학력	초졸	6.0	5.0	6.5
	중졸	15.9	14.2	16.7
	고졸	60.8	56.5	63.0
	전문대졸	8.0	11.1	6.5
	대졸	8.8	12.4	7.0
	대학원이상	0.4	0.8	0.2
전직장의 근속년수	6개월 미만	25.4	24.2	26.7
	6개월 -1년 미만	15.4	16.2	14.5
	1-2년미만	17.9	19.1	16.7
	2-5년미만	23.9	24.7	23.1
	5-10년미만	11.1	10.8	11.4
	10-15년미만	3.4	3.5	3.3
	15-20년미만	1.5	0.9	2.2
	20년 이상	1.4	0.5	2.3
기업규모	30인 미만	5.8	5.5	5.9
	30인 이상-100인 미만	38.4	41.0	37.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8.6	28.5	28.7
	300인 이상-500인 미만	9.4	9.6	9.3
	500인 이상-1,000인 미만	5.1	5.4	5.0
	1,000인 이상	12.8	10.0	14.1
이직전 직종	임직원, 관리자	2.3	2.8	2.1
	전문가	2.1	3.1	1.6
	기술자 및 준전문가	5.8	6.6	5.5
	사무직	21.9	22.0	21.9
	서비스근로자등	6.7	7.4	6.4
	농업, 어업	0.2	-	0.3
	기능원	28.0	27.3	28.3
	조립원	10.0	10.2	9.9
	단순노무직	22.9	20.6	24.0

## 2. 미취업자의 구직활동형태

본 조사에서는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취업상태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어떠한 방법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지,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아래의 <표 3-40>에 의하면, 현재 미취업자중 지금까지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52%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약 48%에 그쳐, 이직후 단지 50%만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 3-41>은 구직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현시점까지 꾸준히 구직활동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것인데, 구직활동 경험을 있는 사람들 중 약 63.7%만이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현재 미취업자들의 이직후 구직활동 경험(단위: %)

경험여부	구직활동경험
있다	51.9
없다	48.1
합계	100.0

<표 3-41> 구직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구직활동의 지속성(단위: %)

지속성 여부	구직활동의 지속성
꾸준히 해왔다	63.7
중간중간 쉼 적이 있다	36.3
합계	100.0

아래의 <표 3-42>는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방법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들의 경우, 주로 광고를 통한 구직활동이 3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의 소개로 인한 구직이 21%, 전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가 16.4%였으며,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활동은 15.1%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재취업자의 구직방법과 비교해 보면, 재취업자의 경우 개인적 인맥에 의해 재취업을 한 경우(약 54.7%, 미취업자는 약 37.4%)가 많고 광고나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비율(약 26.7%, 미취업자는 약 53.4%)은 낮은데 비해, 미취업자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구직방법은 광고(약 38.3%, 재취업자는 약 20.6%)나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해서(약 15.1%, 재취업자는 약 6.1%) 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미취업자의 재취업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구직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특성과 직업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함으로써 공공직업소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적 인맥에 의해 구직의 성공비율이 높은 것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미취업자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구인여부를 정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다.

<표 3-42> 현재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 방법: 재취업자와 비교(단위: %)

구직활동방법	재취업자	미취업자
학교/학원의 추천	1.7	1.0
광고를 통해	20.6	38.3
전직장에서 업무상 지인을 통해	18.2	16.4
친구/친지의 소개	36.5	21.0
공공직업소개를 통해	6.1	15.1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	1.3	0.8
직접 찾아가서	5.3	3.9
인터넷/PC통신을 통해	1.5	2.3
전직장에서 다시 다니라고 함	4.0	-
타회사 제의	2.0	-
기타	2.8	1.2
합계	100.0	100.0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취업자들의 약 52%가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64%가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미취업자들의 재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미취업자들이 취업을 제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물어 보았다.

아래의 <표 3-43>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취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15.4%를 차지하였고, '학력/기능/자격이 맞지 않음'이 8.6%, '근무환경/조건이 맞지 않음'이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 미취업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재취업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43> 현재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 중 초래되는 어려움(단위: %)

구분	구직활동중 어려움(%)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	53.4
취업정보 부족	2.9
학력/기능/자격이 맞지않음	8.6
경험 부족	3.1
임금이 낮음	4.9
근무환경/조건이 맞지않음	6.8
나이가 많음	15.4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가 적음	1.6
기타	3.3
합계	100.0

아래의 <표 3-44>은 현재 미취업자들이 취업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현재 미취업자들 중 취업제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4%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71.6%는 취업제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45>은 취업제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의를 거절한 이유를 분석한 것인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제의를 거절한 이유로 ‘근무조건/근무환경이 나빠서’인 경우가 23.4%로 가장 많았고, ‘적성/기능/경험과 안 맞아서’가 16.2%를 차지하였으며, ‘급여/수입이 적어서’인 경우가 8.4%, ‘육아문제’로 인해서가 8.0%에 해당하였다. 기타인 경우도 19.2%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에는 ‘결혼 준비중’이나 ‘나이가 많아서’, ‘거리가 멀어서’, ‘개인사정’등이 해당한다.

<표 3-44> 현재 미취업자들의 취업제의 경험여부(단위: %)

취업제의 경험	비율
있다	28.4
없다	71.6
합계	100.0

<표 3-45> 취업제의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중 취업제의 거절이유(단위: %)

내용	비율
급여/수입이 적어서	8.4
근무조건/근무환경이 나빠서	23.4
적성/기능/경험과 안맞아서	16.2
일이 임시적이어서	3.2
장래성이없어서	4.6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것 같아서	4.4
건강상의문제	4.9
육아문제	8.0
원하는 자리가 없어서	2.7
공부하고 싶어서	5.0
기타	19.2
합계	100.0

앞에서 미취업자가 취업제의를 거절한 가장 큰 이유로 ‘근무조건/근무환경이 나빠서’임을 살펴 보았었다. 그렇다면, 현재 미취업자들이 생각하는 재취업장의 근로조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본 조사에서는 재취업시 원하는 임금수준, 즉 의중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표 3-46>은 미취업자들이 재취업시 원하는 임금수준, 즉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미취업자들의 의중임금은 50-100만원 사이가 5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0-150만원 사이가 25.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50만원 미만의 임금을 원하는 경우는 2.8%,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원하는 경우는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100만원정도의 임금을 원하는 사람이 미취업자 전체의 약 60%로 현재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임금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7>에 분석된 의중임금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이 약 86.1%를 차지하였고, 남성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이 약 44.5%, 100-150만원 미만이 약 37.3%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0세 미만의 저연령층과 50세의 이상의 고연령층이 30대와 40대의 중년층의 경우보다 의중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의중임금이 50-100만원 미만이 약 74.6%를 차지하였고,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는 약 66.0%를 차지하였다. 반면, 30-39세 연령층과 40-49세 연령층의 의중임금은 50-100만원미만이 각각 39.5%, 45.0%를 차지하였으며, 100-150만원 미만이 각각 40.4%, 34.0%를 차지하였다. <그림 3-5>은 의중임금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취업자들은 재취업시 원하는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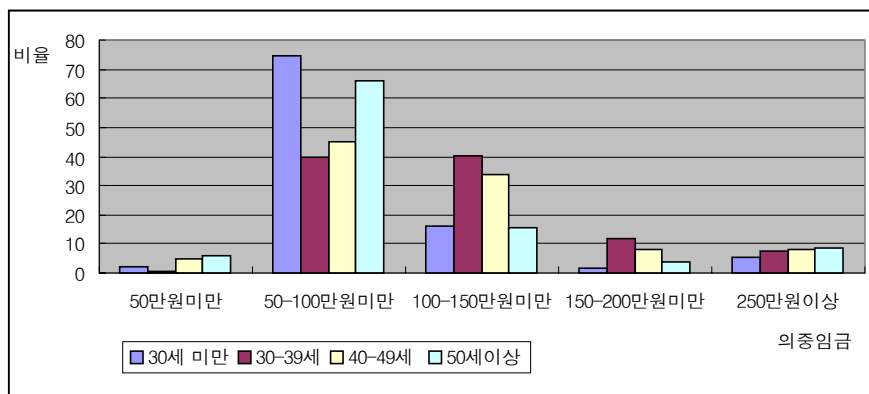
하고 취업제의를 받지 못하거나 취업제의를 거절하고 지속적인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직자가 생각하는 근무조건 및 개인의 적성/기능과 구인자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즉 구직자의 욕구와 구인자의 욕구를 매칭(matching)한 적합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해 준다.

<표 3-46> 현재 미취업자들의 성별 의중임금수준(단위: %)

임금 수준	성별		전체
	남성	여성	
50만원 미만	1.2	5.4	2.8
50-100만원 미만	44.5	86.1	59.6
100-150만원 미만	37.3	4.3	25.3
150-200만원 미만	8.1	1.5	5.6
200만원 이상	8.8	2.8	6.7
합계	100.0	100.0	100.0

<표 3-47> 현재 미취업자들의 연령별 의중임금수준(단위: %)

임금수준	연령구분				전체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50만원 미만	2.4	0.6	4.8	5.7	2.8
50-100만원 미만	74.6	39.5	45.0	66.0	59.6
100-150만원 미만	16.2	40.4	34.0	15.7	25.3
150-200만원 미만	1.6	12.0	8.1	3.8	5.6
200만원 이상	5.2	7.5	8.1	8.8	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3-5> 현재 미취업자들의 연령별 의중임금수준분포

다음으로, 97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이직자중 1년이 경과한 현재시점까지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개월간의 구직활동여부와 구직포기여부를 물어 보았다. 아래의 <표 3-48>을 살펴보면, 현재 미취업자중 지난 1개월동안 구직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는 42.7%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57.3%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중 아예 구직을 포기한 비율도 36.9%를 차지하였다.

<표 3-48> 현재 미취업자의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경험 및 구직포기여부(단위: %)

내용	지난 1개월간구직활동경험	구직포기여부	
		그렇다	42.7
아니다	57.3	그렇다	36.9
		아니다	63.1
합계	100.0	합계	100.0

<표 3-49>은 미취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구직을 포기한 미취업자들 중 약 34%는 ‘적절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8%는 ‘가사/육아의 의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가 11%를 차지하였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도 9.1%에 해당하였다. 기타에는 결혼, 기능이나 학력의 부족, 개인사정 등이 포함된다.

<표 3-49> 구직을 포기한 미취업자들의 구직활동 포기이유(단위: %)

내용	미활동/포기이유
적절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4.0
가사/육아의 의무때문에	18.8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9.1
학교/학원에 다녀서	11.0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서	5.2
여성/고령/장애인에 대한 차별때문에	3.1
자영업 준비	2.9
기타	15.9
합계	100.0

앞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향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는 전체 이직자의 약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중 적당한 일



자리가 없거나,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서, 혹은 여성/고령/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구직활동을 포기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적당한 일자리가 주어질 경우 다시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망실업자 중 일자리가 주어질 경우 다시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아래의 <표 3-50>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중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다시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2%, 취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구직활동을 포기한 미취업자중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취업의향(단위: %)

구분	취업의향(%)
그렇다	82.0
그렇지 않다	18.0
합계	100.0

### 3.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구직형태 및 직업훈련형태

아래의 <표 3-51>는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구직 근무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취업자의 약 78.2%가 정규직 형태의 직장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트타임 형식의 직장생활을 원하는 경우는 8.6%였으며, 일용직은 8.3%, 자기 사업을 원하는 경우는 약 5%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미취업자 중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3/4이상이라는 분석결과는 고용형태의 유연화로 인해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51>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구직 근무형태(단위; %)

구분	비율
직장생활-정식직원	78.2
직장생활-파트타임	8.6
일용직	8.3
자기사업	4.9
합계	100.0

미취업자 중 원하는 구직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아래의 <표 3-52>에서 보여지듯이, 현재 미취업자중 약 37%가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3%는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직업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직업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직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종으로 재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취업자 중 86.8%가 직장생활 형태로 재취업을 원했고,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 약 81%가 재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희망한 반면, 약 19%만이 창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희망하였다는 분석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취업자들의 경우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재취업하기를 원하면, 직업훈련 또한 임금근로자로서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고용형태가 직장인이었던 고용보험 이직자만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위의 분석결과를 전체 미취업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3-52> 원하는 구직형태와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을 의향 (단위; %)

구분	직업훈련 받을 의향
그렇다	36.8
아니다	63.2
합계	100.0

<표 3-53>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희망직업훈련(단위: %)

구분	희망직업훈련
창업과 관련된 교육	19.9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	80.1
합계	100.0

## 제 5절 요약

지금까지 고용보험DB와 실업급여수급자DB에서 표본추출한 고용보험 피보험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이동과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보험 사업장 이직자중 약 50%가 재취업을 경험하며, 이들 중 1년이 지난 조사시점에서 계속 재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약 33.7%를 차지하였다. 수급자들의 경우 약 37%가 재취업을 경험하며 이 중 계속 재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수급자 전체의 약 21.5%이며, 비수급자들의 경우 약 50%가 재취업을 경험하며, 계속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비수급자 전체의 약 34.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보험 사업장 이직자들의 재취업형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

는 비율이 약 82%이며,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약 16%,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하는 비율이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의 경우 비수급자보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약 85% : 82%), 자영업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약 13% : 16%) 그리 큰 차이는 없었다.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에 있어서는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약 50일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취업으로 인한 임금은 수급자들의 경우 이직전 164만원에서 재취업시 90만원으로 약 7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직방법에 있어 재취업자의 절반이상인 약 54%가 친구나 친지, 전직장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 등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재취업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현재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망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추정해보았는데, 현재 미취업자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비율은 42.7%이며, 구직활동을 포기하였으나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취업할 의향이 있는 실망실업자의 비율은 약 57%,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비율은 약 10.3%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참고문헌

- 김재호 (1997),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1997, 199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 DB』 .
- 노동부 (1998), 『고용보험 피보험자 DB』 .
- 노동부 (1999), 『고용보험제의 주요내용』 .
- 방하남 (1998),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급 및 재취업 실태분석: 1996-1997년도』,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1998),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1998), 『KLI 노동통계』 .
- 한국노동연구원 (1999), 『고용보험동향』 제4권 제1호.
- Atkinson, A. and Micklewright, J. (1991),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ix, Dec.
- Schmid, G., O'Reilly, J. and Schomann, K. (1996),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Edward Elger: UK and US.